

■ 세부과제 시리즈 ■

- 10-17-01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10-17-02
기업처벌론
- 10-17-03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 10-17-0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 10-17-05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Criminal Sanction on Corporate Activity(II)
- The Current Practices of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

이천현 · 송효중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송효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Criminal Sanction on Corporate Activity(Ⅱ)
- The Current Practices of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

이천현 · 송효종

■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송효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주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증대하고 있고 그 활동 영역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무분별한 이윤추구, 첨예한 기업간의 경쟁, 위험을 수반하는 기술의 발전, 복잡하고 난해한 시장거래관계의 새로운 형성 등에 기인한 수많은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날로 더 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범죄행위는 그 피해의 대규모성, 심각성 등으로 인하여, 좁게는 기업 자체의 존립여부와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결정하고, 한편으로는 당해 기업의 거래 상대방 그리고 넓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퇴보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영리추구를 기업의 목적이 되게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현상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는 2개년(2009년 및 2010년)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년도(2009년)에는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현상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금년 2차년도(2010년)에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2010년의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기업처벌론」,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등 총 5개의 연구로 구성·수행되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공적 제재 - 특히 형사제재 - 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새로운 제재수단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위법활동에 대한 민사적·행정적·형사적 규제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해 보고, 더 나아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기업의 자율규제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비교법적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도입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이천현 연구위원, 권수진 전문연구원, 김호기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 양천수 영남대학교 교수, 이정민 단국대학교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I. 연구범위	18
II. 연구방법	20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	21
제1절 서론	23
제2절 형사제재	24
I.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	24
II. 몰수·추징	32
제3절 행정제재	33
I. 기업 운용제한 제재	33
II. 금전적 제재	38
III. 명예관련 제재	42
제3절 민사제재	44
I. 소비자단체소송제도	44
II. 선정당사자제도	45
III. 공동소송제도	45

IV. 집단소송제도	45
제4절 자율규제	47
I. 내부통제제도	47
II. 자율규제제도	54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문제점	59
제1절 형사제재의 한계: 양벌규정의 한계	61
I. 면책조항의 효과	61
II. 업무관련성의 의미	64
III. 벌금부과액의 한계	65
IV. 몰수·추징	66
제2절 제재의 중복부과	67
I.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의 병과	67
II. 과징금과 벌금형의 병과	68
제3절 자율규제의 인센티브 정책의 부재	69
제4장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71
제1절 설문문의 개요	73
I. 설문조사의 목적	73
II. 설문조사 방법	7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82
I. 기업의 기본정보	82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	85
III.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108
IV.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 및 제재 경험	112
V.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113
제3절 요약	120

제5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	125
제1절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127
제2절 제재 상호간의 체계화 필요	129
제3절 자율규제의 활성화	131
제4절 제재내용의 명확화	135
제6장 결 론	137
참고문헌	141
Abstract	145
부록 [설문지]	149

표 목 차

〈표 4-1〉 표본할당 개요	76
〈표 4-2〉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	84
〈표 4-3〉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 및 도입시기	85
〈표 4-4〉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종업원 규모	86
〈표 4-5〉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매출액 규모	86
〈표 4-6〉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자본금 규모	86
〈표 4-7〉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경영형태	87
〈표 4-8〉 CSR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복수응답)	88
〈표 4-9〉 CSR 활용 이유	88
〈표 4-10〉 CSR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89
〈표 4-11〉 향후 CSR 관련규정을 수립할 계획	89
〈표 4-12〉 기업 간 거래시 CSR 조회 여부	90
〈표 4-13〉 중점적으로 조회하는 내용(복수응답)	91
〈표 4-14〉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에 관한 필요성 및 필요이유	92
〈표 4-15〉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필요 요소	92
〈표 4-16〉 회사 내부규정에서 금지되어 있는 항목 (복수응답)	93
〈표 4-17〉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	94
〈표 4-18〉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종업원 규모	94
〈표 4-19〉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매출액 규모	95
〈표 4-20〉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자본금 규모	95
〈표 4-21〉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외국인 지분	96
〈표 4-22〉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증권시장 상장 여부 ...	96
〈표 4-23〉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경영형태	97
〈표 4-24〉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 및 도입시기	97
〈표 4-25〉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업종 구분	99
〈표 4-26〉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종업원 규모	100

〈표 4-27〉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매출액 규모	100
〈표 4-28〉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자본금 규모	101
〈표 4-29〉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외국인 지분	101
〈표 4-30〉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경영형태	101
〈표 4-31〉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여부 및 도입시기	102
〈표 4-32〉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업종 구분	103
〈표 4-33〉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종업원 규모	104
〈표 4-34〉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외국인 지분	104
〈표 4-35〉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경영형태	104
〈표 4-36〉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홍보방법 및 홍보대상	105
〈표 4-37〉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평가제도 보유여부	106
〈표 4-38〉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처리절차	106
〈표 4-39〉 사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107
〈표 4-40〉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시기	108
〈표 4-41〉 가해기업의 국적	109
〈표 4-42〉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109
〈표 4-43〉 민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110
〈표 4-44〉 형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111
〈표 4-45〉 행정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111
〈표 4-46〉 법령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경험 여부	113
〈표 4-47〉 행정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114
〈표 4-48〉 형사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115
〈표 4-49〉 민사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116
〈표 4-50〉 법준수프로그램의 운영시 인센티브	117
〈표 4-51〉 법준수프로그램 운영시 정부의 기준 제시 여부	118
〈표 4-52〉 다른 형벌 수단의 필요성 여부	118
〈표 4-53〉 다른 처벌수단에 대한 의견	119

그림 목차

〈그림 5-1〉 새로운 형벌 수단의 필요성 여부	127
〈그림 5-2〉 새로운 형벌 수단에 대한 의견	129
〈그림 5-3〉 CSR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133
〈그림 5-4〉 형사적 인센티브	135
〈그림 5-5〉 행정적 인센티브	135

1. 기업범죄와 제재체계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형사제재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 형사제재와의 중복성 문제에 기인한 형사제재의 행정제재로의 전환 또는 행정제재의 형사제재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중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 효율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다양한 특별절차가 논의·도입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자율적 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2. 연구방향과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를 형사제재, 행정제재, 민사제재 및 자율규제로 4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소개하고, 특히 형사제재, 행정제재 및 민사제재와 관련하여 향후 나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재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체계(공적 제재), 내적(자율적) 규제, 새로운 제재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Survey)를 수행하였다.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는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Corporate Ethics), 법령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② 타사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③ 기업의 위법사례와 이로 인한 처벌 결과, ④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련된 인식과 향후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사는 서울/경기에 위치한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각 기업의 법무팀, 인사팀 및 경영기획팀의 관리자 급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훈련된 면접원을 투입하여 일대일 대면 방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책제언

가.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유일한 형사제재인 양벌규정에 대한 일련의 보완대책은 양벌규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규정 도입, 유죄판결의 공표, 주식벌금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원상회복, 개선명령, 법인해산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적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몇 가지 대체 제재수단을 제시하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5점 척도) - ‘매우필요’와 ‘필요’ 2가지 응답을 합한 수치를 보면,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기업의 사회봉사, 원상회복, 개선명령 등 4가지 제재에 대해 도입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엄

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할 주식벌금제, 기업의 해산 및 영업정지 등과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죄판결의 공표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제재 상호간의 체계화 필요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형사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제재는 그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즉 모든 문제행위에 대하여 모두 형벌규정에 의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형사제재의 위하력 약화(주로 적용이 편리한 행정제재가 선호되기 때문에), 형벌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위반,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과 형벌(벌금형)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여 이원화하여야 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제재별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유형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벌금형(징역형 포함) 부과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그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자율규제 활성화

기업범죄에 대한 공적규제(형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적발의 어려움 등 기업범죄의 특성상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가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자율적인 규제체계는 강제력이 적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반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율규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활동과 공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제도가 제대로 확립된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나 과징금의 감경과 같은 금전적인 행정적 혜택이나, 형사책임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혜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 과태료 또는 과징금 감경(24.6%), 직권 조사 면제(8.2%)가 그 뒤를 이었다. 형사적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기는 하였지만(53.6%) -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면제(17.4%)와 형의 완화(18.6%)의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분야 이외에도 특히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규제가 많은 경제활동영역인 공정거래, 노동, 환경, 보건분야 등에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제재내용의 명확화

기업의 제재경험이나 제재체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도려해 볼 때, 새로운 제재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에 있어서는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형사제재 경험이유로는 ‘규정을 잘 몰라서’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제재,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행정제재는 43.2%, 형사제재는 40.1%,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52.4%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1장

서론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1차년도(2009년)에는 기업활동의 경제활동에서 수반되는 기업범죄의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금년 2차년도(2010년)에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그리고 집단소송 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도 주요한 제재(규제)체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중심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때문에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특히 형사제재와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 형사제재와의 중복성 문제에 기인한 형사제재의 행정제재로의 전환 또는 행정제재의 형사제재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사제재와 관련하여서는 - 중요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 효율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다양한 특별절차가 논의 · 도입되고 있다. 한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자율적 규제가 제도적으로 도입 ·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 연구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를 형사제재, 행정제재, 민사제재 및 자율규제로 4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 · 소개하고, 특히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향후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재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체계(공적 제재), 내적(자율적) 규제, 새로운 제재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Survey)를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범위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는 2개년(2009년, 2010년) 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연구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현상” 파악이 주된 연구내용이었다. 즉 기업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현상과 이에 대한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금년 2010년에는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적 제재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위법활동에 대한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제재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역학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는 다음과 같이 총 5개로 나누어 연구 · 편제를 하였다.

- (제1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2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처벌론
- (제3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 (제4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 (제5권)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제1권에 해당하는 이 연구는 모든 연구의 총괄적인 연구로서 총 4개의 주요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형사제재, 행정제재, 민사제재, 자율규제 등 4개 영역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내용과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현행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유일한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인 양벌규정의 한계,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 부과 문제, 자율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의 부재 문제 등을 다루었다.

제4장은 - 이상의 제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에 관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윤리경영(Corporate Ethics), 법령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② 타사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③ 기업의 위법사례와 이로 인한 처벌 결과, ④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련된 인식과 향후 대책.

제5장은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범죄 억제에 위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제재체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서울/경기에 위치한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은 각 기업의 법무팀, 인사팀 및 경영기획팀의 관리자급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기업의 규모 및 주력업종 등의 기업관련 기본정보는 2009년 하반기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조사는 일대일 대면 방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이루어졌다.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

제1절 서론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는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제재, 과징금이나 행정상 공표 등과 같은 행정제재,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민사제재,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 등과 같은 기업 스스로의 자율 규제 등이다.

형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공적규제로서 제재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업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민사제재)는 기업 측에서 볼 때는 일종의 제재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제재’라는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자율규제는 내부통제제도와 자율규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통제제도는 일정한 경우 준법감시인제도 등의 운용과 같은 내부통제가 법적으로 의무지워지는 경우이고, 자율규제제도는 일정한 영역에서 업계 스스로가 독자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자율규제도 공적규제(형사제재, 행정제재)와 함께 주요한 제재체계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제2절 형사제재

Ⅰ.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

1. 양벌규정

기업범죄에서 기업은 대부분 법인인데, 한국에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이 양벌규정이다. 즉 행정법규상의 벌칙규정에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가 다른 사람 즉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현재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은 약 400여개의 행정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양벌규정에 의해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목적은 한편으로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을 사용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장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양벌규정과 관련하여서는 ① 양벌규정을 통한 단순한 벌금형의 부과는 자연인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법인에게는 별 타격이 될 수 없어 법인범죄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실효성의 문제와, ②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형벌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²⁾나 법인처벌 근거가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한 문제³⁾ 등의 이론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⁴⁾

1) 가장 일반적인 입법 형태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의 규정이다.

2) 현재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 부정설, 긍정설, 부분적 긍정설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부분적 긍정설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행정법의 경우에만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진다.

3) 이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책임설, 자기책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실책임설은 과실의제설, 과실추정설, 과실책임설 등으로 나누어지고,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부작위감독책임설과 부작위감독책임·행위책임 이원설로 나누어진다.

4)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처벌론』를 참조하기 바람.

2. 양벌규정 입법방식의 변화

양벌규정에 대한 많은 논의 결과,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 양벌규정 입법방식의 통일화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7년)과 법무부의 입법추진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7년)

양벌규정의 입법방식을 통일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제6조)에 대한 2007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⁵⁾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주인)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 하도록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을 종업원에 대한 업무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⁶⁾⁷⁾

5)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 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법무부의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

이에 법무부는 2008년 7월 양벌규정 개선을 위해 ①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②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하여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며(문화재보호법, 공직선거법 등 총 15개 법률이 개정 대상), ③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여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의료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 총 7개 법률이 개정 대상) 관련 법률 총 392개를 2008년 연말까지 모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⁸⁾

(2) 모든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신설

종래에는 면책조항이 없는 양벌규정이 다수를 점하였다. 이에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 근거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형법상 책임주의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⁹⁾ 판례는 면책조항이 없는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지만,¹⁰⁾ 면책조항이 있는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을 분명히 하였다.¹¹⁾

6)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판결.

7) 이어 2009년에 양벌규정에 대한 6건의 위헌판결이 나왔다. 즉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입·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8헌가10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8헌가18 판결), 구 도로법 제86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8헌가17 판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8헌가14 판결), 의료법 제91조 제1항(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8헌가16 판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8헌가24 판결)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하였다.

8) 법무부(www.moj.go.kr) 보도자료(2008-7-24). 2008. 7.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9)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1998), 104쪽 등 참조.

10)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7도412 판결; 대법원 1968.8.26 선고 69다115 판결.

1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결국, 상술한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최근 법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대부분이 면책규정을 두는 추세에 있다. 즉 양벌규정 단서에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문의 표현상 사업주인 법인 또는 자연인 자신이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방식의 증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근거를 - 이전의 입법 상태와 비교해 볼 때 - 다소 더욱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예시: 자격기본법]

2008년 개정 이전의 법	2008년 개정법(2008.12.26)
제42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u>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3) 징역형 삭제

일부의 행정법률은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 이외에 업무주(법인)에게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07년 위헌결정을 받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12) 이천현,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과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2008), 15~16쪽 참조.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동법 제5조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주에 대하여 자유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책임주의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 상술한 - 2007년 위헌결정을 계기로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예시: 관세법]

2008년 개정 이전의 법	2008년 개정법(2008.12.26)
제279조 (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u>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u>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제280조 (법인처벌) 제280조 (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u>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u>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1조 (면책) (생략)	제27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u>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u>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 5. (생략)

(4)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한정: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

통상적으로 양벌규정은 그 적용을 위해서는 - 법인을 처벌할 경우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즉 법인 또는 개인영업주 등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만 당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양벌규정들은 이러한 ‘업무 관련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 6. 1일 시행예정인 2010. 5. 31일 개정법률(법률 10334호)은 업무관련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2009.4.1일 개정)이나 의료법 제91조(2009.12.31일 개정) 등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률	2010년 개정법(2010. 5. 31) (2011. 6. 1 시행)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제2항·제3항,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벌금형 강화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하는 입법을 통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되고 있다.

양벌규정은 통상적으로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인의 종업원이 예를 들어 10 상표법(2001년 개정 이전의 것)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인 종업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위법행위는 직접 행위자인 종업원 등에 의한 경우보다 법인의 영업활동 그것으로 행해지는 경우 권리침해의 용이성과 그 피해액이 크고 그로 인한 이득도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 특히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경제적 규모가 커서 일반적으로 낮은 벌금형이 별다른 제재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자연인의 벌금형의 상한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법률과 같이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으로써는 형벌로서의 위하력이 없고 처벌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하여는 중한 벌금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일부 개정법률들은 자연인과 벌금형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상표법 제97조(2001년 개정), 특허법 제230조(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 제87조(2001년 개정), 실용신안법 제50조(2001년 개정) 등이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법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벌금형(자연인에 비해 약 3배가량 상향조정)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¹³⁾¹⁴⁾

[예시: 상표법]

2001년 개정 이전의 법	2001년 개정법(2001.2.3)	2008년 개정법(2008.12.26)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u>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u>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u>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u> 1. 제93조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u>그 법인에게</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u>그 개인에게는</u>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13) 이러한 규정들은, 엄격히 말하면, 위반행위를 행한 본범(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과 그 법인에 대한 처벌(벌금형)을 분리한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위반행위를 행한 본범(종업원 등)의 영업주가 법인영업주인 경우와 개인영업주인 경우에 서로 다른 액수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개인업무주와 법인업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되 법인업무주 뿐만 아니라 개인업무주에 대해서도 종업원에 대한 벌금형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양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112조는 종업원이 저지른 위반행위 중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법인업무주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에서는 개인업무주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4) 이천현, 위의 글, 13~14쪽 참조.

2001년 개정 이전의 법	2001년 개정법(2001.2.3)	2008년 개정법(2008.12.26)
	벌금	<u>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제93조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이러한 규정방식은 산업재산권 보호 영역에만 존재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중과하도록 한 것은 힘들여 개발한 산업재산권의 가치비중에 비해 권리침해의 용이성과 그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침해가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입법방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⁵⁾¹⁶⁾

다. 적용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주체가 법인 이외의 단체로의 확대되고 있다. 양벌규정의 규정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입법방식은 명문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만을 그 적용주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⁷⁾ 이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에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최근에는 명문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

15) 이와 유사하지만 독특한 입법방식으로는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참조 바람.

16) 이천현, 위의 글, 14쪽 참조.

17) 물론, 당해 법령의 특성상 본래부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을 ‘단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260조는 제1항은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단체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50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등도 참조 바람.

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 통폐합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1996년 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9조(1999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8조(2008년), 통계법 제40조(2007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2004년) 등도 마찬가지이다.¹⁸⁾

II. 몰수·추징

형법 제48조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한 종류인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 추징을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중요한 어려움이 있다. 즉 형법상 몰수는 ‘물건’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은행예금이나 대출채권 등 무형적 이익을 포함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일반에 대하여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기업범죄를 통해 얻은 기업이 취득한 이익은 대부분 무형적 이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8) 그 밖의 양벌규정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양벌규정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제현안 제2003-10호(2003), 2쪽 이하; 국회 법제실, 입안기준에 대한 몇가지 재검토, 법제현안 제2007-16호(2007), 12쪽 이하;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쪽 이하; 조병선, “양벌규정의 구조와 행위자의 특징”, 법무부,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 자료집(2008.6.20), 209쪽 이하 등 참조.

19)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물론 일부 형사특별법에,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몰수의 대상으로 ‘이익’을 인정(제10조 제2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정 대상이 중수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 보기 어렵다.

제3절 행정제재

행정제재는 ① 법인해산, 영업정지, 공급거부, 시정조치, 관허사업 제한 등과 같은 기업운용제한 제재, ②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은 금전적 제재, ③ 공표제도 등과 같은 명예관련 제재로 대별할 수 있다.

I. 기업 운용제한 제재

1. 법인해산 등

법인해산은 기업의 운용·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재로서, 기업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이다. 형벌과 단순 비교를 하면 - 형식적인 측면에서 - 자연인에 대한 사형에 준하는 제재라 할 수 있다.

상법상에 법인해산이 규정되어 있다. 즉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등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해산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제재들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립허가취소(예를 들어, 의료법 제51조), 영업허가취소(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75조), 등록취소(예를 들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이 법인해산과 유사한 중한 제재라 할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18.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2.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③ (생략)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조직체의 선의의 구성원이나 관련자(채권자 등)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해산된 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법인을 창설함으로써 이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영업정지(조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조업정지는 기업의 활동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재로서, 일정기간 기업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이다. 실무상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시정조치 등 완화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은 제재의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형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6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공급거부

공급거부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화, 전기,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행정에 의해 공급되는 각종의 의무나 재화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종래에는 예를 들어 旧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2항은 위법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²⁰⁾

그러나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행정을 주요 행정목표로 삼고 있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무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²¹⁾에 위반될 소지가 많

20)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2항과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건축법 제69조 제2항(2005. 11월 이전의 법률)은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1)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이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불문원칙을 말한다.

았다. 이에 공급거부를 규정한 법률들은 순차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삭제²²⁾하여 현재에는 공급거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²³⁾

4. 시정조치 등

(1)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식처분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등 관계 법령상의 시정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는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말한다. 즉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동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 등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정조치는 그 양태와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작위명령: 주식처분명령, 임원의 사임명령, 채무보증 취소명령, 계약조항 수정·삭제명령, 합의파기명령, 거래개시·재개명령 등 피심인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 부작위명령: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피심인의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 보조적 명령: 관련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 시정명령의 이행결과 보고명령, 일정기간동안 가격변동 사실의 보고명령, 공정거래법에 관한 교육실시명령, 관련자료 보관명령 등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시정조치

22) 旧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제2항(1999.2.8. 삭제), 旧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2항(1999.4.15. 삭제), 旧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 제2항(1999.2.8. 삭제), 旧건축법 제69조 제2항(2005.11.8. 삭제) 등.

23) 이천현, 위의 글, 25쪽 참조.

이러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 형벌 등을 부과한다(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67조 제6호 참조).

(2) 개선명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법에 규정된 항목별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내리는 행정적인 조치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등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을 완료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대표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조업정지 등, 과징금, 형벌 등을 부과한다(예를 들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2조, 제76조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5.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제한은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 인가 혹은 면허를 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사업 내지 직업선택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허사업제한제도는 당장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입감소,

고객감소 등 경제적손실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재효과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제1항 각호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²⁴⁾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 제4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4조 제6항).

Ⅱ.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과징금은 - 일본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 본래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른 행정제재금으로 도입된 것이다.²⁶⁾²⁷⁾

24) 특정한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권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당해 사업·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11조).

25) 또한 국제징수법 제7조, 지방세법 제40조, 병역법 제76조 등 참조.

2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0.12. 31. 법률 제3320호) 제8조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7) 일본은 1970년대 초반 위법카르텔사건이 빈발하였으나, 형벌과 손해배상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배제조치도 행위중지명령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위반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1977년 5월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카르텔에 의해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의 확보와 위반행위의 억제에 위한 취지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였다(郷原信郎, “獨占禁止法違反に対する制裁の現状と課題”, 獨占禁止法のエンフォースメント(日本經濟法學會年報, 第22号), 2001, 84쪽 참조. 이와 같은 일본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근간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 12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가격남용행위(제6조)에 대하여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에는 거의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과징금은 법인에 대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과가 큰 제재로 평가되고 있고, 이 때문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법률들이 무한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998년까지 과징금을 규정한 법률은 45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9년 이후 67개가 늘어 현재에는 120여개에 달하고 있다.²⁸⁾ 즉 종래 과징금을 규정하지 않았던 법률들 예를 들어 선물거래법(제95조의8)이 2007년에, 상호저축은행법(제38조의2)도 2007년에, 은행법(제65조의3)이 2002년에 새로 도입하는 한편, 2000년 이후 새로 제정되는 법률 예를 들어 2002년에 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44조)이 과징금제도를 규정하는 등 과징금을 도입하는 법률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러한 증가추세 속에서, 1980년 이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도²⁹⁾가 도입되면서 애초에 예외적인 형태이던 것이 일반적인 법제도로 정립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이 예외적인 형태이던 것이 현재에는 일반적인 법제도로 정립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은 주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익성 있는 사업에 한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현재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법률의 대상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행정편의를 위한 도입 또는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확대도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³⁰⁾³¹⁾

한편, 과징금제도의 본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데 있는데, 그 상한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과징금의 상한이 상향조정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는 2004년 법개정

28) 과징금제도에 대한 현행법제에 관한 관한 내용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입안기준의 검토, 법제현안, 제2007 17호(2007), 1쪽 이하 참조.

29)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 제도”란 다수국민이 사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생활의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과징금을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박기석,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2쪽 참조).

30)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반행위가 형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과징금과 벌금 또는 과징금과 과태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1) 이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이천현, 독점규제법위반행위에 대한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88쪽 이하 참조.

(2004.12.31)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보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종래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에서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인상하였다.

2004년 개정 이전의 법	2004년 개정법(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u>100분의 5</u>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u>100분의 10</u>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법규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업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기업(법인 또는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접적 부과방식이다. 즉 행위의 주체를 기업(법인 또는 단체)으로 하고 이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를 예로 들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3.25>

⑤ 삭제 <2009.3.25>

⑥ 삭제 <2009.3.25>

둘째는 양벌규정에 의한 부과방식이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1개 존재한다. 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이러한 두 번째 방식에 의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는 특별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3.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다.³³⁾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1년 건축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현재 건축법 제8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은행법(제6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07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2. (생략)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32)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도도입의 수단이 되었던 긴급명령 제16호(1993. 8. 12일)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거래불편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과 함께 일반법률로 대체하여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7.12.31일(법률 제5493호) 제정된 것이다.

33)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같이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함을 주안으로 하는 수단인데 반해 과태료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주안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삭제 <2009.3.25>

Ⅲ. 명예관련 제재

1. 공표

‘공표명령’이란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특정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공표명령제도는 복잡한 절차없이 신속하게 발동이 가능하고 경비가 저렴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의무이행확보 수단의 하나로 등장하여 경제관련법령에서 상당수 제도화되었다(旧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2005년 이전의 법률) 제7조 등).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대부분 법원의 재판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되기도 전에 행정기관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스스로 일반공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³⁴⁾

34) 헌법재판소 2002. 1. 31. 결정, 2001헌바43 전원재판부(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그러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공표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다. 경제관련 법령에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행정기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속히 범위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침해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종래의 대부분의 법률들은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5의 규정 등은 “범위반사실의 공표” 대신 범위반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수정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2003. 7. 29 개정법률).³⁵⁾

2. 행정상 공표제도

‘행정상 공표’는 개별 법률에서 행정청이 직접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표를 한다는 측면에서 특정 기업 등에게 위반행위 사실에 대하여 공표를 하도록 명하는 ‘공표명령’ 제도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행정관청에 의한 공표 즉 ‘행정상의 공표’제도는 종래에도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러한 보호적, 경고적, 예방적 형태의 공표조치를 넘어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범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로서 앞서 본 입법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라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범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한 경우,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범위반사실을 인정케 하고 이를 공표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명령형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 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범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범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범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35) 이천현, 위의 글, 21-23쪽 참조.

많지 않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³⁶⁾ 최근에도 이 보다는 ‘공표명령’이 보다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³⁷⁾

제3절 민사제재

유책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절차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것만을 간단히 소개한다.³⁸⁾

I.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9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액다수의 소비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소비자 각자가 소액의 피해를 구제받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소송을 수행할 실익도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송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법원의 소송허가가 이루어져야 소송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³⁹⁾

36) 식품위생법 제65조의2(2005.1.27 신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3항(2002.03.25 신설) 및 제21조 제2항(2007. 12. 27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1992. 12. 08 신설) 등 참조.

37) 상세히는 이천현, 위의 글, 21-23쪽 참조.

38)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천현, 다단계사기 등 다수피해자 관련 재산범죄의 범죄수익 보전 및 피해자보호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5쪽 이하 참조 바람.

39) 2008. 7.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 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제공의 중지를 요청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10. 14일 경실련 등 4개 소비자 단체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을 허가하였다.

Ⅱ.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이들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한다. 선정당사자제도는 피해자 각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라고 선정된 자만이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송에서 전피해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일괄처리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에서 벗어나 제3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이다(민소법 제53조).

Ⅲ. 공동소송제도

공동소송제도는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로서 다수 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일한 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함으로써, 심판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노력을 절약하게 하는 한편, 분쟁의 통일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민소법 제65조 이하).

공동소송제도는 기본적으로 1대1의 개별소송의 병합으로 구성되어 투자자나 다수 피해자 구제소송 등 같은 당사자가 많은 집단분쟁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소송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복잡하게 하고 소송을 지연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Ⅳ.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즉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구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참조).⁴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요건은 엄격하다.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효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송브로커 등에 의한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는 원칙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에 대하여는 법적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며, 허가여부 결정시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법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40)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누락, ②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누락, ③ 미공개정보의 이용·시세조작, ④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로 제한되어 있다.

제4절 자율규제

I. 내부통제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은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기업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정부에서도 일정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⁴¹⁾

1. 준법감시인제도

가. 도입

1998년 외환위기의 원인 분석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금융 전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구조조정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진국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준법감시인 제도가 2000년에 처음 도입되어 제 3의 특정인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하여 법규준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직내의 각 부서나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견제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에 한정되어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금융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즉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인의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성이 금융산업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상시적인 통제 감독장치로서 법규 준수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41) 이에 관하여는 이천현, 위의 글, 28~29쪽 참조.

년도	법률명 및 법조	도입
2000년	보험업법 제17조	2000. 01. 21
	은행법 제23조의3	2000. 01. 21
	증권거래법 제54조의4	2000. 01. 2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2000. 01. 2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조의3	2000. 01. 28
200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2001. 03. 28
2003년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3	2003. 07. 3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조	2003. 10. 04
2004년	농협동조합법 제125조의4	2004. 12.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2004. 10. 22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	2005. 03. 24
	새마을금고법 제63조	2005. 08. 04
2007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8조	2007. 08. 03

나. 준법감시인제도의 내용

(1) 의의

우리 현행법상 준법감시(compliance)란 일반적으로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을 의미하고,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개념, 업무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 1. 21일 금융관련법률 개정을 통하여 “준법감시”로 통칭되고 있다.

금융회사에 있어서 준법감시기능(Compliance)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내용⁴²⁾

□ 내부통제기준 제정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⁴³⁾를 정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 선임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 즉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준법감시인의 임면 및 자격 등

① 준법감시인의 임면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8조, 제350조)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43)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1조).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의 자격

-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벌금이상형 선고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견책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준법감시인의 임무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재

내부통제기준을 두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겸직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49조 제1항 제9호~제12호).

(3) 문제점

현행 준법감시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① 준법감시인에게 법규준수에 관련된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 등 각종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내부통제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업무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②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③ 준법감시인의 지위에 대한 기업이나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여 기업의 경영실무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경시될 위험이 있다는 점, ④ 준법감시인의 자격과 자질에 관한 문제는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⁴⁴⁾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외부이사 또는 별도의 감사 3명의 감사위원회를 구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내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감사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199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 당시 감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보유 등 법률상 강력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결여되어 경영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내의 소위원회로서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2/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감사관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감사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적인 기구(상법 제415조의2 제1항)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은 감사를 둘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는

44)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의 준법감시제도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2010·봄호), 70쪽.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이러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단독감사에 비하여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점, 상근감사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경영진 등의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 보다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전적인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부여되고 있는 감사의 권한과 함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먼저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① 업무·회계감사권(제412조), ② 이사로부터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권한(제412조의2), ③ 주주총회 소집청구·소집권(제412조의3), ④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제412조의4), 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 ⑥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⑦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권 등을 가진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정관, 이사회규정 또는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회계창고·금고·장부 및 물품의 봉인,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기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를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규의 공통사항으로 담고 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광의의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구성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법(Sabanes Oxley act of 2002)”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2003.12.11일 도입).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외부감사대상기업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관련 전담 조직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목적(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목적,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4. CEO/CFO 공시서류 인증제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의 회계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1999년 대우그룹, 2003의 (주) SK글로벌과 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등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못하고 회계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계속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2001년 발생한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회계개혁법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참조하여, 기업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서류(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기재의 사실이 없고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다는 점을 대표이사(CEO)와 재무담당이사(CFO)가 확인·검토하여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 2003. 12. 31. 개정).⁴⁵⁾

만약 최고경영자 등이 허위 기재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증 서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통합법 제444조 제13호).

Ⅱ. 자율규제제도

일반적으로 시장경제하에서의 규제는 시장규제, 정부규제 그리고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규제는 상업적 행위를 관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기재)이고, 이 시장규제가 특별한 문제나 상황을 처리하는데 부적절한 경우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필요로 된다. 정부규제는 공적규제를 말한다. 자율규제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조치로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제반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업계가 협회 등의 결성을 통해 스스로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약을 제정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최근 기업의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되고 복잡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 공적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 공적규제만으로는 기업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자율규제가 하나의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공적규제의 경우 실정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여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나, 자율규제의 경우 규제절차의 간이성·유연성으로 신속하고 예방적인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해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용성을 갖는다.⁴⁶⁾

45)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9조 제5항, 제159조 제7항.

46) 상세히는 이천현, 위의 글, 30~31쪽 참조.

1. 자율규제업무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29일 제정)에서는 금융투자업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제283조), 협회의 업무 중의 하나로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6조 제1호).

이에 협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에 대한 조사·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즉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동 규정 제9조~제10조).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제재의 사유) 위원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법·부당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본국의 금융관련 법령을 포함한다)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2.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등 감독당국의 규정,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의 조치가 있는 때
3. 정관 또는 업무 등에 관한 협회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
4. 총회,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투자자보호에 반하는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때

제10조(제재의 종류) ① 위원회가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호의 제재는 회원에 대한 다른 제재에 병과할 수 있다.

1.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요구
2. 회원자격의 정지
3.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개정 2010.3.26)
4. 제재금의 부과
5. 경고
6. 주의

② 위원회가 회원의 임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주주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여부 결정시까지 업무집행 정지 권고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업무집행정지
3. 경고

4. 주의

③ 위원회가 회원의 직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회원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별표 2와 같다.

2. 자율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아직 법률로써 의무지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영역이 있다. 즉 공정거래 영역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이 운용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독점규제법 준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독점규제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2010.04.0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유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CP”를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정의하고,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CP 등급평가”를 하고 있다. CP 등급은 CP 제도의 도입,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CP 교육체계 구축, 자율준수 편람, 인사제재시스템 구축, 자율준수풍토 조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감시, 문서관리 구축, CP의 기업경영 체화(Built-in CP), 자율준수 점검체계(Compliance Check System),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CP 평가 및 감사 등에 대하여 항목별 중요도, 기업의 준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상의 과징금 부과의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서의 공포기간의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의 면제 가능성도 인정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10.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도입·운영, 등급평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3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문제점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문제점

제1절 형사제재의 한계: 양벌규정의 한계

I. 면책조항의 효과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최근 법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의 대부분이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입증책임의 전환

면책규정에 의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근거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면책규정에 의해 과실에 대한 추정이 행해지거나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될 여지는 계속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종래의 면책조항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공중위생법사건)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관세법사건)

“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위 법 제280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직원 등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그 행위가 법인 내부의 결재를 밟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행위의 동기가 직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헌법상 보장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 양벌규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은 검사의 입증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부의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 보다는 기업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굳이 이는 공판정에서의 증거공방 과정에서 기업측이 자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입증책임전환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은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자의 배려⁴⁷⁾이지 검사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in dubio pro reo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에 부과되는 형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면책규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면책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⁴⁸⁾

47) 신동운, 형법총론, 2005, 779쪽.

2. 주의의무의 내용

또한 - 법인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지침을 주고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면책을 위해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되는지 전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정법의 특성상 각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정형화하여 기업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의 실행이 기대될 수 있고, 또 그 의무를 태만히 하는 점에 대한 책임비난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또는 회사대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후술함).

3. 책임 감경 또는 면책의 법적 근거

면책기준의 제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연방양형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은 회사 안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및 윤리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형사책임의 최고 95%까지 감면하도록

48)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10-111쪽;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2007/9), 69쪽.

하고 있다(Federal Sentencing Guideline § 8C2.5(f)(g), § 8C4.10 등 참조).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방 양형위원회는 2004년 4월 30일 기존의 법준수 외에 윤리강령(ethical conduct)을 추가하였다. 이는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⁶⁵를 반영한 것으로, U.S.S.G § 8B2.1. 가이드라인 수정안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8B2.1.(b)(1)).
2.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컴플라이언스와 윤리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정통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실행과 실효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위 임원들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윤리프로그램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개인에게 적절한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 8B2.1.(b)(2)).
3. 기업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은 개인이 실질적인 임원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B2.1.(b)(3)).
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종업원과 임원이 함께 논의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어야 한다(§ 8B2.1.(b)(4)).
5. 감시, 감사, 평가, 프로그램의 홍보도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8B2.1.(b)(5)).
6. 조직 전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8B2.1.(b)(6)).
7. 불법행위가 감시 된 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유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8B2.1.(b)(7)).

또한, 후술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2010.04.0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업무관련성의 의미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의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즉 법인 또는 개인영업주 등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의 인정을 위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양벌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자가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업무주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둘째,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주를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지만,⁴⁹⁾ 셋째, 행위의 동기가 반드시 업무주의 이익을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⁵⁰⁾⁵¹⁾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축적이 필요하다.

Ⅲ. 벌금부과액의 한계

현행법상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 유일하게 벌금형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벌금형 상한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조의 자연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과 동일하다.

따라서 자연인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법인에게는 별 타격이 될 수 없어 법인 범죄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자연인의 행위는 직접 행위자인 자신을 위한 경우보다 법인 등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한 이득도 당해 법인 등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금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 상술한 바와 같이 - 산업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으로써는 형벌로서의 위력이 없고 처벌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하여는 중한 벌금형에 처

49)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50)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213 판결(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1)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4집(2009), 99쪽 이하 참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서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즉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증권범죄 등 기업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 1991년 법제심의회 형사법부 벌금형검토소위원회가 “양벌규정에서 위반행위자와 법인 업무주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연동하여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후 - 행위자의 벌금액과 법인의 벌금액을 분리하여 증권거래법(1992년), 독점금지법(1992년),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폐기물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1997년) 등 각 형벌규정에서 자연인과 분리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⁵²⁾

이러한 입법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산업재산권 보호 영역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법인 벌금형을 그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법인 처벌에 소극적인 현실에서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산업재산권 보호 영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제재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Ⅳ. 몰수·추징

행위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가치가 법인에 귀속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업범죄로 인한 이익이나 가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몰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법인에 대한 형벌로써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몰수와 추징이다.

다만 기업범죄에 의해 취득된 이익의 주된 부분은 무형의 이익이므로 무형의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⁵³⁾

52) 山本和昭, “兩罰規定における業務主に對する罰金額と行爲者に對す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時報, 第1402号(1992/1), 3쪽 이하; 岩橋義明, “兩罰規定における罰金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第773号(1992/3), 61쪽 이하 등 참조.

제2절 제재의 중복부과

I.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의 병과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들은 하나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형사절차, 행정절차 및 민사절차에 의해 중첩적으로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제9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첫째, 행정절차에 의해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②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제18조 제2항). 그리고 ③ 상호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둘째,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경우 - 형사절차에 의해 ① 상호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의 이하의 벌금(제66조 제1항)에 처하고, ②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7조 제6호).

셋째, 민사절차에 의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56조 제1항).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57조). 물론 이러한 특칙을 가진 공정거래법상의 민사소송절차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53) 박광섭,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충남대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31쪽.

이처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형사적 제재까지 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 할 수 있다. 민사제재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와 이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행정제재는 다양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부과된다. 그리고 형사제재는 일정한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가치 즉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명백한 구분없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 모든 제재체계를 전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이중처벌 또는 과잉처벌이라는 비판 외에도 제재의 효율성 측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Ⅱ. 과징금과 벌금형의 병과

종래에는 과징금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징수하여 위반행위자가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억제에 도모하고 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행정상 조치로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의 반사회적 내지 반윤리성을 근간으로 하여 그에 과해지는 형사벌과는 그 취지, 성격, 목적 및 그 절차를 달리 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는 별도로 벌금형(형벌)에 처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1항)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⁵⁴⁾

그러나 자연법과 법정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경제범죄라고 하여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실해나 실해의 가능성이 반드시 적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리고 현재의 과징금이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⁵⁵⁾⁵⁶⁾

54) 박윤훈, 최신행정법강의(상), 2000, 647쪽;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0, 300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 498쪽 이하; 서울고등법원 1998. 11. 4. 선고, 98누9488 판결;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참조.

55) 이동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론, 1997, 131쪽. 이에 대하여는 또한, 이주희, 위의 논문, 99쪽 이하; 윤동호,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과 현실”, 형사정책연구 제65호 (2006·봄호), 183쪽 이하 등 참조.

제3절 자율규제의 인센티브 정책의 부재

우리나라는 - 상술한 바와 같이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내부통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 제도가 - 금융산업에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 도입되었지만, 동 제도의 취지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제도를 수용하면서 준법감시인 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⁷⁾

내부통제제도 및 자율규제제도는 기업 측면에서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부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은 모든 영역에서 참조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2010.04.0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유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상의 과징금 부과액의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서의 공표기간의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의 면제 가능성도 인정된다.

구분	제 재	감 면 내 용
사후적 유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상의 과징금 부과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 (1) A : 100분의 10 이내 (2) AA : 100분의 15 이내 (3) AAA : 100분의 20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공표지침」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 ■ 「공표지침」 5.의 다.(3)(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의 라.(2)(나)에 의한 전자매체공표에 대한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

56) 따라서, 예를 들어 해운법 제60조 제2항(벌칙적용의 특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7) 이정민/신의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15쪽.

구분	제 재	감 면 내 용
사전적 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아래의 기간동안 직권조사관련 법규 ⁵⁸⁾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1) A : 1년 (2) AA : 1년 6개월 (3) AAA : 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10.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도입·운영, 등급평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다른 모든 법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5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과 기준」

제4장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제1절 설문지의 개요

I. 설문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기업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행정 및 민사적 제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역할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사회의 제도화된 규범 및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은 매우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으로 더 나아가면 단순히 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떠나 사회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주체로써 사회에 일정부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등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의 준법 및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와 실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준법수준과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들의 수준과 보완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담당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개 이러한 분야는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많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철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법무담당부서 등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나 기업의 법무팀 담당자 등 주로 고위급 임원들과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사의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기업에 법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간 애매한 담당영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적합한 대상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조사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위법 사실과 피해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가해사실을 묻는 설문지의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가해사실과 가해로 인한 처벌 등의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조사원이 충분한 비밀보장사실을 공지하고 성실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기업의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제약점으로 인해 기업범죄 및 법 준수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는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령준수 및 제재 수단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있어왔지만, 대부분 표본 선정과 설문 문항의 체계적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양케이트 수준의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수준의 조사는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조사가 거의 대부분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나 팩스를 통한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기업의 준법과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위치에 있는 책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설문 문항의 개수와 문항의 질문 수준에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본 설문조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양케이트 수준의 제한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한국 기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 및 기업윤리 관련 규정 보유 여부, 기업관련

가해 및 피해 사실, 형사 및 행정적 규제에 대한 인식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추리통계를 위한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고급추리통계를 이용한 인과관계의 분석보다는 주로 기업과 법령준수에 관련한 실태를 보여주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며, 기업 특성과 관련된 차이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설문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본 설문조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과 기업의 경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 및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제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는 서울/경기에 위치한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11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각 기업의 법무팀, 인사팀 및 경영기획팀의 관리자 급 이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기업의 규모 및 주력업종 등의 기업관련 기본정보는 2009년 하반기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앞서 지적했듯이 기업이 느끼기에 민감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불성실한 응답 및 의도적 은폐를 방지하고자 훈련된 면접원을 투입하여 일대일 대면 방식(Face-to-Face Interview)으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표본 선정

표본집단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단의 분포는 한국상공회의소 기업정보자료와 리서치 전문 업체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의 기업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 최종적인 표본은 기업체의 주력업종에 따라 할당하여 선정하되, 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임의로 할당을 조정하였다. 구체적인 표본할당과정과 최종 진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표본할당 개요

업 종 구 분	모집단 자료	최초 할당 결과		실제조사표본	
코드표기준	소계	비례할당	수정 할당	개	차이(개)
제조업	13,018 (21.8%)	65	65	94 (29.7%)	29
광업	34 (0.1%)	0	0	—	—
건설업	1,613 (2.7%)	8	10	18 (5.7%)	8
운수업	2,611 (4.4%)	13	14	31 (9.8%)	17
출판, 영상, 방송정보 서비스	5,504 (9.2%)	28	28	26 (8.2%)	-2
사업서비스	2,679 (4.5%)	13	14	21 (6.6%)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41 (0.7%)	2	0	—	—
어업 농업 임업	394 (0.7%)	2	0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17 (0.2%)	1	0	1 (0.3%)	1
도매 및 소매업	19,103 (32%)	96	96	55 (17.4%)	-41
숙박 및 음식점업	1,565 (2.6%)	8	10	6 (1.9%)	-4
금융 및 보험업	1,622 (2.7%)	8	10	28 (8.8%)	18
통신업	4,577 (7.7%)	23	23	13 (4.1%)	-1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588 (1%)	3	0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1,138 (1.9%)	6	10	3 (0.9%)	-7
교육서비스	705 (1.2%)	4	0	—	—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1,976 (3.3%)	10	10	9 (2.8%)	-1
부동산 임대업	2,064 (3.5%)	10	10	12 (3.8%)	2
계	59,749 (100%)	300	300	317 (100%)	

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조사에서는 전체 기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의 비중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산술적인 비례를 통해 할당량을 분배한 것이 “비례할당”이라고 구분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숫자이다. 여기에서 전체업종대비 지나치게 비중이 작은 몇 업종(광업, 보건 및 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모자란 수만큼을 다른 업종에서 채운 것을 “수정할당”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조사는 이 “수정할당”을 기반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앞서도 지적했듯이 기업에서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유로 다른 조사에 비해 응답 거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문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국한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조사를 진행하는데 할당 비중이 약간 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실제 적용된 표본할당비중은 “실제조사표본”이라는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조사표본” 항목을 보면 먼저, 전체 표본이 317개로 기존 할당에서의 300개보다 17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수정할당”에서보다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업종은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으로써 제조업은 기존 할당에 비해 29개 표본이 증가되었으며, 반대로 도매 및 소매업은 기존에 비해 41개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기존의 표본 할당계획과는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표본의 개수가 300개 이상으로 크다는 점과,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한 두 업종이 모두 이미 전체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조사결과의 왜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업종별 할당을 설정하고 업종 내의 기업에 대해 무작위 표집방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설문 문항 구성

설문은 크게 총 다섯 가지 분야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 설립연도, 규모 등의 정보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윤리경영(Corporate Ethics), 법령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타사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는 기업의 위법사례와 이로 인한 처벌 결과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련된 인식과 향후 대책을 묻는 문항들이 구성되었다.

가. 기업의 기본정보

기업의 기본 정보와 관련된 문항은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업 특성에 따른 차이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기본적인 기업 정보인 기업의 위치와 설립연도,

종업원 규모, 주력업종 구분, 매출액과 자본금의 규모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종업원의 수, 매출액, 자본금 등에서의 차이는 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준법 관련 및 윤리규정을 각각 어떤 수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지, 기업의 위법행위 및 피해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업의 수익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 경영형태, 외국인 지분 보유율 및 외국인 지분의 역할 등을 문항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요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이라 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CSR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 또는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장 먼저 물어 보았다. CSR 규정 운영 여부 및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이 문항들에서 CSR과 관련된 규정 및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최초로 언제 규정이 되었는지, 왜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반면에 CSR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왜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지, 후일에 이런 규정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CSR을 하고 있거나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것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을 포함시켜 기업에서 CSR을 통해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 실질적으로 CSR이 타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내 및 국외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CSR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반대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CSR에 대한 조회를 요구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 경우에는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요구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한편 기업윤리 및 법령준수에 관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기업윤리와 법령준수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 또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윤리경영과 법령준

수의 실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 각각의 기업에서 사규로 금지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를 위한 전담부서, 사내교육제도, 위법방지시스템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물어 보았다. 특히, 위법방지시스템의 경우에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사외인사를 통한 검증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정형화된 처리 절차나 사원의 지위에 따른 별도의 처리절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및 기타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 직원들의 윤리성 및 준법성이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되며, 이것이 인사고과에 활용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윤리성과 준법성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이 부분에서는 타 기업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대응제도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과 함께, 피해가 있었다면 언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국내기업 혹은 해외 기업)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물어서 피해의 내용과 주제, 시기, 대처방법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도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점, ‘매우 만족’, 2점, ‘만족’, 3점, ‘보통’, 4점, ‘불만족’, 5점, ‘매우 불만족’으로 구분하였다. 이중에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설문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기업법령위반에 대한 현 제도의 수준과 문제점 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라.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 및 제재 경험

여기서는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조사대상 기업이 법령위반으로 인해 각종 제재(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만일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인지, 그러한

제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특히 기업이 위반사실 관련 법령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저지르게 된 배경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응답을 선택한 경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문하였다. 그 밖에 해당 기업 및 기업의 사원이 받았던 제재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는 문항을 따로 만들어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법령의 위반 빈도가 높은지, 또 어떤 처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마.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앞선 문항들에서 기업의 법령위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행정적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행정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행정제재와 관련된 제도, 현행법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물었고, 이어 행정제재의 종류 중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물었다. 형사제재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와 유사하게, 이와 관련된 현행법 및 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위에 언급한 문항들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인식과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업의 생각을 묻는 문항을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위반 방지를 위한 사내제도가 마련되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형사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항과 이러한 사내제도의 운영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의 제시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현재 기업에 대한 유일한 제재수단이 벌금형뿐인데, 이것 이외에 다른 형벌수단이 필요한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을 통해 기업 스스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재수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방법

위와 같은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의 법령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려 한다. 빈도분석에서는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기술하고 이러한 응답 비율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편 교차분석에서는 집단변수로 앞서 언급했었던 기업의 기본정보 항목에서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보게 될 것이다.

교차분석에 이용되는 기업의 특성은 먼저 업종의 차이를 꼽을 수 있다. 한 기업이 어떤 업종에 주력하는가에 따라 법령위반과 관련된 경험 및 인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기업의 규모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이며, 관련 내규 및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규모는 종업원의 수와 매출액, 자본금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또 기업의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주로 해외업체와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장여부도 중요한데, 일반 개인의 투자를 받는 상장기업의 경우 엄격한 상장 심사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상장기업에 비해 법준수 관련제도에 더 관심이 높을 수 있다. 경영형태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운영이 창업주 혹은 오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경영인(CEO)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기업이 법준수 및 윤리적 경영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지의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지분보유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국인 중심으로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조사는 이러한 교차분석을 통한 결과의 해석에 한계를 갖게 된다. 본 조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는 하지만 설문에 응답하는 것은 이러한 분야에 관련된 개인이기 때문에 조사대상과 설문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의 빈도를

최대한 기술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집단 간 차이는 객관적인 응답이 가능한 문항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설문조사 결과

I. 기업의 기본정보

기업기본정보문항을 바탕으로 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업종구분의 경우 앞서 표본할당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집단의 비율에 최대한 근사하도록 조정하였다. 업종구분에서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비율이 각각 29.7%, 1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이 각각 9.8%, 8.8%, 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종업원의 수, 매출액 규모, 자본금 규모)를 각각 살펴보면, 우선 종업원의 수 같은 경우 50명 미만의 사업장이 56곳으로 17.7%,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사업장이 69곳으로 21.8%,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사업장은 110곳으로 34.7%, 300명 이상 사업장은 82곳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의 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각 구간의 개체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규모 같은 경우 50억 미만이 17.7%,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8.5%, 100억에서 200억 사이가 13.9%, 200억 이상의 기업은 176곳으로 55.6%를 차지하였다. 1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이 7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금 규모의 경우는 30억 미만이 42.6%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30억에서 80억 미만이 15.8%, 80억 이상도 36.3%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출비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여부, 경영형태, 외국인 지분 여부 등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비중의 경우 66.9%에 달하는 212개 업체가 내수만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수출을 하는 기업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22곳으로 6.9%를 차지했으며, 50% 미만 기업은 72곳으로 22.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출비중에 관한 기업의 특성은 해외기업과 관련한 법령위반 및 피해, 관련규정 여부와 연결되어 기업 간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여부는 코스피 상장기업이 전체 대상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기업은 6%를 차지했다. 반면 80% 이상이 비상장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가치나 평판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 및 관리형태 역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창업주가 운영의 주체인지 전문경영인이 운영의 주체인지에 따라 법령관련 가해 사실이나 법령위반방지시스템 등의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이 기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경우 단기적인 이윤창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의 51.4%에 해당하는 기업이 완전한 오너 경영 체제라고 응답했으며, 전문경영인이 있으나 오너 개입이 약간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9%, 전문경영인이 있으나 오너 개입이 상당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 완전한 전문경영인 체제는 14.8%를 나타내었다. 그 밖의 다른 경영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15.8%에 달했다.

외국인지분의 비율 역시 이러한 경영형태와 유사한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지분이 있는 기업은 46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14.5%로 나타났으며, 그 중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이 50% 미만인 기업이 37곳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 외국인 지분의 역할에 대해 참고해 보기 위한 문항에서는 단순한 지분참여가 전체 46곳 중 29곳(63%)로 나타나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기술지원이나 경영에의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

	구 분	업체 (개)	백분율 (%)
업종구분	제조업	94	29.7
	건설업	18	5.7
	운수업	31	9.8
	출판, 영상 방송서비스업	26	8.2
	사업 서비스	21	6.6
	도매 및 소매업	55	17.4
	숙박 및 음식점업	6	1.9
	금융 및 보험업	28	8.8
	통신업	13	4.1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3	0.9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9	2.8
	부동산 임대업	12	3.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	0.3
종업원 수	50 명 미만	56	17.7
	50 명 이상 ~ 100명 미만	69	21.8
	100 명 이상 ~ 300명 미만	110	34.7
	300 명 이상	82	25.9
매출액 규모	50 억 미만	56	17.7
	50 억 이상 ~ 100억 미만	27	8.5
	100 억 이상 ~ 200억 미만	44	13.9
	200 억 이상	176	55.5
	모름 / 무응답	14	4.4
자본금 규모	30 억 미만	135	42.6
	30 억 이상 ~ 80억 미만	50	15.8
	80 억 이상	115	36.3
	모름 / 무응답	17	5.4
수출 비중	수출 없음	212	66.9
	50% 미만	72	22.7
	50% 이상	22	6.9
	모름 / 무응답	11	3.5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	코스피 상장	34	10.7
	코스닥 상장	19	6.0
	비상장	261	82.3
	모름 / 무응답	3	0.9
경영 형태	완전한 오너경영	163	51.4
	전문경영자 있으나 오너개입 약간 있음	41	12.9
	전문경영자 있으나 오너개입 상당히 있음	16	5.0
	완전한 전문경영	47	14.8
	기 타	50	15.8
외국인 지분 비중	50% 미만	37	11.7
	50% 이상	9	2.8
	외국인 지분 없음	264	83.3
	모름 / 무응답	7	2.2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의 역할 ⁵⁹⁾	지분참여	29	63.0
	기술지원	3	6.5
	경영참여	2	4.3
	기술지원 및 경영참여 모두	7	15.2
	모름 / 무응답	5	10.9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

1. CSR 관련규정 보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CSR과 관련된 독자적인 사내규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약 52.4%인 166곳의 업체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4-3〉 참조). 이를 통해 현재 전체의 절반정도의 기업에서 CSR의 내용과 관련된 사내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SR 관련 규정이 언제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54.2%)이 2000년 이전에 CSR 관련 규정이 수립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가 21.7%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CSR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운영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 및 도입시기

구 분	업체(개)	백분율(%)
보유함	166	52.4
보유하지 않음	151	47.6
계	317	100
2000년 이전	90	54.2
2001년 ~ 2003년	36	21.7
2004년 ~ 2006년	17	10.2
2007년 이후	18	10.8
모름 / 무응답	5	3.0
계	166	100

한편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 여부와 기업 간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규모, 경영

59) 이 문항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있다고 응답한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형태 등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4>부터 <표 4-7>까지는 각각 기업의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규모, 경영형태와 CSR 관련 규정 여부의 교차 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의 수와 매출액, 자본금의 규모가 클수록 CSR 관련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차이가 매우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CSR 관련 규정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4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종업원 규모

(단위 : 개, %)

CSR 규정보유	종업원 규모				
	50명 미만	50명~100명	100명~300명	300명 이상	계
보유함	27(48.2)	23(33.3)	61(55.5)	55(67.1)	166(52.4)
보유하지 않음	29(51.8)	46(66.7)	49(44.5)	27(32.9)	151(47.6)
계	56(100)	69(100)	110(100)	82(100)	317(100)

$$\chi^2(3)=17.94, p < .001$$

표 4-5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매출액 규모

(단위 : 개, %)

CSR 규정보유	매출액 규모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 이상	계
보유함	18(32.1)	13(48.1)	21(47.7)	106(60.2)	158(52.1)
보유하지 않음	38(67.9)	14(51.9)	23(52.3)	70(39.8)	145(47.9)
계	56(100)	27(100)	44(100)	176(100)	303(100)

$$\chi^2(3)=14.1, p < .01$$

표 4-6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자본금 규모

(단위 : 개, %)

CSR 규정보유	자본금 규모			
	30억 미만	30억~80억	80억 이상	계
보유함	53(39.3)	32(64.0)	74(64.3)	159(53.0)
보유하지 않음	82(60.7)	18(36.0)	41(35.7)	141(47.0)
계	135(100)	50(100)	115(100)	300(100)

$$\chi^2(2)=18.61, p < .001$$

또한 경영형태의 경우 완전한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일수록 CSR 관련 규정의 보유 비율이 다른 형태의 경영방식을 택하고 있는 기업보다 높았다.

표 4-7 기업의 CSR 관련 사내규정 보유여부와 경영형태

(단위 : 개, %)

CSR 규정보유	경영형태					
	완전한 오너경영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약간 개입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상당히 개입	완전한 전문경영인 경영	기타	계
보유함	70(42.9)	27(65.9)	8(50.0)	35(74.5)	26(52.0)	166(52.4)
보유하지 않음	93(57.1)	14(34.1)	8(50.0)	12(25.5)	24(48.0)	151(47.6)
계	163(100)	41(100)	16(100)	47(100)	50(100)	317(100)

$\chi^2(4)=18.03, p < .001$

이는 전문경영인들이 기업운영에 있어서 법준수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창업주 주도의 경영과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사내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문경영인의 경우 그러한 내부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풀이될 수 있다. 그 밖에 업종이나 상장여부, 외국인 지분 보유 여부 등 다른 특징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입시기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CSR 관련규정 내용 및 활용 여부

한편 CSR과 관련한 사내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그것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언제 규정이 수립되었는지, 왜 규정을 활용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R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하라’라는 문항에서는 ‘기업윤리 및 법령준수’가 가장 높은 빈도(84.8%)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기업이 특히 법 준수와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용(61.8%)을 담고 있다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밖에 ‘공정 거래 및 경쟁’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 공헌: 기부활동’, ‘고객정보 관리’ 등과 같은 대답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4-8 CSR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복수응답)⁶⁰⁾

구 분	업체(개)	백분율(%)
인권존중: 아동노동 배제·외국인 노동자 배려 등	62	37.6
건강·안전	102	61.8
기업윤리·법령준수	140	84.8
공정한 증권거래: 내부자 거래 방지 등	53	32.1
자유공정·투명한 거래·경쟁	86	52.1
고용기회 균등	73	44.2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51	30.9
환경 부하 경감·에너지 절약	66	40.0
고객·주주에 대한 가치의 제공	55	33.3
자원 재활용	37	22.4
고객정보의 관리	75	45.5
지적 소유권 보호	44	26.7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배제	32	19.4
사회 공헌: 기부활동 등	80	48.5
기타	2	1.2

‘CSR 관련 규정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는 ‘고객 만족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8.2%를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응답이 20.5%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법이나 행정상의 압력으로 인해 관련규정을 도입했다는 응답도 13.9%를 차지함으로써 단순히 기업의 이윤 및 윤리, 준법의식 등의 이유로만 관련 규정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규제정책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밖의 종교적 이유나 공적 인센티브로 인해 규정을 도입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표 4-9〉 참조).

표 4-9 CSR 활용 이유

구 분	업체(개)	백분율(%)
법률·행정적 압력	23	13.9
윤리·종교적 이유	17	10.2
고객만족도 개선	80	48.2
품질·생산성 향상	34	20.5
공적 인센티브	4	2.4
깨끗한 경영 방침	3	1.8
기업윤리	1	0.6
모름/무응답	4	2.4
계	166	100

60) 여기서 전체 응답 기업은 앞서 CSR 관련 사내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166개 기업이다. 각 문항의 백분율은 이 수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이다. 이후의 모든 복수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또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CSR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151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지와 향후 CSR 관련 규정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CSR 관련 규정을 활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 ‘시간 및 금전적 자원의 부재’라는 응답이 전체 46.4%를 차지했으며, 공적 인센티브의 부재나 사회적 책임경영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응답도 상당부분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인프라 부족, 작은 조직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 등 주로 조직의 규모가 작아서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CSR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업체(개)	백분율(%)
시간금전적 자원의 부재	70	46.4
사회적 책임경영 효과에 대한 의문	13	8.6
공적지원(인센티브 등)의 부재	17	11.3
기타	15	10.5
없다	14	9.3
모름 / 무응답	22	14.6
계	151	100

‘CSR 관련 규정의 향후 수립 계획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선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67.5%), 수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표 4-11〉 참조). 이 문항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1 향후 CSR 관련규정을 수립할 계획

구 분	업체(개)	백분율(%)
있다	49	32.5
없다	102	67.5
계	151	100

3. CSR 조회 여부

한편 〈표 4-12〉에서는 기업이 타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CSR 관련 내용을 조회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던 항목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국내 거래처 대상으로는 87.1%,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는 91.5%의 기업이 CSR 조회를 하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국내 거래처이던 해외 거래처이던 대다수의 기업이 CSR 조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CSR 조회 여부가 거래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별 차이 역시 이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거래처에 대한 CSR 조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4-12 기업 간 거래시 CSR 조회 여부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국내 거래처 대상	하고 있다	39	12.3
	하고 있지 않다	276	87.1
	모름 / 무응답	2	0.6
계		317	100
해외 거래처 대상	하고 있다	22	6.9
	하고 있지 않다	290	91.5
	모름 / 무응답	5	1.6
계		317	100

앞선 문항에서 국내 거래처나 해외 거래처 둘 중 한 곳에서라도 CSR 조회를 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CSR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의 주요 조회 내용으로는 앞서 CSR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기업윤리 및 법령준수’, ‘공정거래 및 경쟁’, ‘고객정보 관리’, ‘사회 공헌’ 등의 항목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중점적으로 조회하는 내용(복수응답)⁶¹⁾

구 분	업체(개)	백분율(%)
인권존중: 아동노동 배제·외국인 노동자 배려 등	10	25.6
건강·안전	10	25.6
기업윤리·법령준수	28	71.8
공정한 증권거래: 내부자 거래 방지 등	13	33.3
자유공정·투명한 거래·경쟁	23	59.0
고용기회 균등	4	10.3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5	12.8
환경 부하 경감·에너지 절약	9	23.1
고객·주주에 대한 가치의 제공	10	25.6
자원 재활용	4	10.3
고객정보의 관리	14	35.9
지적 소유권 보호	5	12.8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배제	5	12.8
사회 공헌: 기부활동 등	16	41.0

4.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의 필요성 및 필요요소

다음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에 관한 기업의 생각을 확인해 보기 위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먼저 〈표 4-14〉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96.2%)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러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이 왜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라는 대답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 수익과 전략적 차원’이라는 대답도 22%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라는 대답도 6.2%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여기서 전체 응답 기업은 앞서 국내 거래처 및 해외 거래처에 대한 CSR 조회를 한다고 응답한 39개 기업이다.

표 4-14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에 관한 필요성 및 필요이유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34	42.3
	필요하다	171	53.9
	필요하지 않다	11	3.5
	매우 필요하지 않다	1	0.3
계		317	100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필요이유 ⁶²⁾	경영 수익과 전략적 차원	67	22.0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19	71.8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	6.2
계		305	100

한편 ‘무엇이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하는데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나(60.9%)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최고경영자의 인식 및 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사회적 인프라’를 주문하는 응답도 상당히 있었는데(24.3%) 이러한 부분의 응답을 볼 때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외부 시장환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였다(〈표 4-15〉 참조).

표 4-15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필요 요소

구분	업체(개)	백분율(%)
CEO의 의지	193	60.9
외부 시장환경	43	13.6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인프라	77	24.3
기타	3	0.9
모름 / 무응답	1	0.3
계	317	100

62)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16〉에서는 실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과 관련된 회사내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이 문항을 통해서 실제 기업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의 초점이 주로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뇌물 수수’와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기업신용훼손’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과 기업신용훼손에 대한 부분의 규정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의 초점이 기업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업체에 부당대우’나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의 허위표시’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표 4-16 회사 내부규정에서 금지되어 있는 항목 (복수응답)⁶³⁾

구 분	업체(개)	백분율(%)
가격 카르텔	23	8.5
입찰담합	61	22.5
부당염가판매	48	17.7
재판매가격의 구속	25	9.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업체 등에 대한 부당한 행위 (하청대금의 지불지연 등)	104	38.4
상품·서비스 내용 등의 허위 표시	95	35.1
특허 침해	40	14.8
유사 상표	34	12.5
결함품의 제조·판매	58	21.4
뇌물(금품이나 향응) 수수	161	59.4
감독기관에의 보고 의무 위반	69	25.5
기업신용훼손	117	43.2
영업비밀 또는 기술 유출	157	57.9
기 타	6	2.3

63) 본 문항의 복수응답 대상은 전체 응답자(317개 기업)를 대상으로 하였다.

5.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구체적인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관련 실천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 내에 윤리 및 준법경영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4.7%를 차지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를 차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설치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17〉 참조).

표 4-17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

구 분	업체(개)	백분율(%)
있다	110	34.7
없다	207	65.3
계	317	100

한편 윤리경영 관련 전담부서 보유 여부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에서는 종업원의 수, 매출액, 자본금의 규모와 외국인 지분 비율, 증권시장 상장 여부, 경영형태 이상 여섯 가지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종업원의 규모에 있어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63.4%)이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불과 전체의 16.1%인 9곳만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종업원의 수가 많을수록 윤리 및 준법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8〉 참조).

표 4-18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종업원 규모

(단위: 개, %)

전담부서 보유여부	종업원 규모				
	50명 미만	50명~100명	100명~300명	300명 이상	계
보유함	9(16.1)	12(17.4)	37(33.6)	52(63.4)	110(34.7)
보유하지 않음	47(83.9)	57(82.6)	73(66.4)	30(36.6)	207(65.3)
계	56(100)	69(100)	110(100)	82(100)	317(100)

 $\chi^2(3)=47.59, p < .001$

한편 매출액과 자본금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액의 경우 비록 전 구간에 걸쳐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200억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약 46.6%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50억 미만의 4.7%, 50억~100억의 18.5%, 100억~200억의 18.2%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9〉 참조).

표 4-19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매출액 규모

(단위: 개, %)

전담부서 보유여부	매출액 규모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 이상	계
보유함	4(7.1)	5(18.5)	8(18.2)	82(46.6)	99(32.7)
보유하지 않음	52(92.9)	22(81.5)	36(81.8)	94(53.4)	204(67.3)
계	56(100)	27(100)	44(100)	176(100)	303(100)

$$\chi^2(3)=38.75, p < .001$$

또 자본금의 경우에는 80억 이상의 높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54.8%), 이러한 결과는 80억 이하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종업원의 수 및 매출액에서의 경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표 4-20〉 참조).

표 4-20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자본금 규모

(단위: 개, %)

전담부서 보유여부	자본금 규모			
	30억 미만	30억~80억	80억 이상	계
보유함	21(15.6)	17(34.0)	63(54.8)	101(33.7)
보유하지 않음	114(84.4)	33(66.0)	52(45.2)	199(66.3)
계	135(100)	50(100)	115(100)	300(100)

$$\chi^2(2)=42.79, p < .001$$

외국인 지분 보유 여부 또한 전담부서의 보유 여부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0.1%로 높은 반면,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21〉 참조).

표 4-21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외국인 지분

(단위: 개, %)

전담부서 보유여부	외국인 지분			
	50%미만	50%이상	외국인 지분 없음	계
보유함	22(59.5)	6(66.7)	79(29.9)	107(34.5)
보유하지 않음	15(40.5)	3(33.3)	185(70.1)	203(65.5)
계	37(100)	9(100)	264(100)	310(100)

$$\chi^2(2)=16.76, p < .001$$

증권시장의 상장 여부도 전담부서의 보유 여부에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약 70% 정도의 비상장기업의 경우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대답했지만, 코스피 상장 기업의 55.9%, 코스닥 기업의 52.6%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표 4-22〉 참조).

표 4-22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증권시장 상장 여부

(단위: 개, %)

전담부서 보유여부	증권시장 상장			
	코스피 상장	코스닥 상장	비상장	계
보유함	19(55.9)	10(52.6)	78(29.9)	107(34.1)
보유하지 않음	15(44.1)	9(47.4)	183(70.1)	207(65.9)
계	34(100)	19(100)	261(100)	314(100)

$$\chi^2(2)=12.15, p < .01$$

마지막으로 경영형태와 전담부서 보유 여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전담부

서의 보유율이 높았고(63.8%), 완전한 오너경영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낮았다(21.8%). 앞서 CSR 관련 규정의 보유 여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주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3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 존재 여부와 경영형태

(단위: 개, %)

전담부서 보유여부	경영형태					
	완전한 오너경영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약간 개입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상당히 개입	완전한 전문경영인 경영	기타	계
보유함	35(21.5)	14(34.1)	5(31.3)	30(63.8)	26(52.0)	110(34.7)
보유하지 않음	128(78.5)	27(65.9)	11(68.8)	17(36.2)	24(48.0)	207(65.3)
계	163(100)	41(100)	16(100)	47(100)	50(100)	317(100)

$\chi^2(4)=36.88, p < .001$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위반을 방지하는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렇다’와 ‘아니다’의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24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 및 도입시기

문 항 내 용	구 분	업체(개)	백분율(%)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	있다	151	47.6
	없다	166	52.4
계		317	100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도입 시기	2000년 이전	63	41.7
	2001년 ~ 2003년	24	15.9
	2004년 ~ 2006년	32	21.2
	2007년 이후	28	18.5
	모름 / 무응답	4	2.6
계		151	100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제도의 도입 시기에 관한 응답을 받은 결과 2000년 이전에 관련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1.7%), 그 외의 시기는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사회적 책임 관련 내규의 도입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와 비슷하게 법령위반 방지 교육제도도 이미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그것을 준비하고 운영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문항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부서가 있는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의 보유여부가 기업 간 특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분석결과 업종, 종업원의 수, 매출액, 자본금의 규모, 외국인 지분 보유여부, 경영형태 등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먼저 <표 4-25>에서는 교육제도 보유에 있어서 업종별 구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많은 업종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제도의 마련 비율이 78.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교육제도 마련 비율이 약 30% 정도에 그침으로써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업종별 차이는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얼마만큼 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경우 고객의 예금 및 기업의 투자금, 보험금 등 엄청난 자산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법규의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취득은 기업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반면 제조업 및 건설업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그것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덜 이루어지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25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업종 구분

(단위: 개, %)

교육제도 보유여부		보유함	보유하지 않음	계
업종 구분	제조업	37 (39.4)	57 (60.6)	94 (100)
	건설업	7 (38.9)	11 (61.1)	18 (100)
	운수업	13 (41.9)	18 (58.1)	31 (1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15 (57.7)	11 (42.3)	26 (100)
	사업서비스	11 (52.4)	10 (47.6)	21 (100)
	도매 및 소매업	23 (41.8)	32 (58.2)	55 (100)
	숙박 및 음식점업	4 (66.7)	2 (33.3)	6 (100)
	금융 및 보험업	22 (78.6)	6 (21.4)	28 (100)
	통신업	5 (38.5)	8 (61.5)	13 (10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0 (0.0)	3 (100)	3 (10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5 (55.6)	4 (44.4)	9 (100)
	부동산 임대업	8 (66.7)	4 (33.3)	12 (1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 (100)	0 (0.0)	1 (100)
계		151 (47.6)	166 (52.4)	317 (100)

 $\chi^2(12)=23.38, p < .05$

한편 <표 4-26>에서는 종업원의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전담부서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제도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6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종업원 규모

(단위: 개, %)

교육제도 보유여부	종업원 규모				
	50명 미만	50명~100명	100명~300명	300명 이상	계
보유함	14(25.0)	29(42.0)	53(48.2)	55(67.1)	151(47.6)
보유하지 않음	42(75.0)	40(58.0)	57(51.8)	27(32.9)	166(52.4)
계	56(100)	69(100)	110(100)	82(100)	317(100)

$$\chi^2(3)=24.81, p < .001$$

〈표 4-27〉에서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0억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에서 교육제도를 더 높은 비중(55.7%)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7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매출액 규모

(단위: 개, %)

교육제도 보유여부	매출액 규모				
	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 이상	계
보유함	21(37.5)	10(37.0)	13(29.5)	98(55.7)	142(46.9)
보유하지 않음	35(62.5)	17(63.0)	31(70.5)	78(44.3)	161(53.1)
계	56(100)	27(100)	44(100)	176(100)	303(100)

$$\chi^2(3)=13.81, p < .01$$

〈표 4-28〉에서는 자본금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며 자본금이 증가할수록 교육제도의 보유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4-29〉에서는 외국인 지분 보유율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의 교육제도 보유율(67.6%, 77.8%)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자본금 규모

(단위: 개, %)

교육제도 보유여부	자본금 규모			
	30억 미만	30억~80억	80억 이상	계
보유함	43(31.9)	26(52.0)	74(64.3)	143(47.7)
보유하지 않음	92(68.1)	24(48.0)	41(35.7)	157(52.3)
계	135(100)	50(100)	115(100)	300(100)

$$\chi^2(2)=26.74, p < .001$$

표 4-29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외국인 지분

(단위: 개, %)

교육제도 보유여부	외국인 지분			
	50%미만	50%이상	외국인 지분 없음	계
보유함	25(67.6)	7(77.8)	112(42.4)	144(46.5)
보유하지 않음	12(32.4)	2(22.2)	152(57.6)	166(53.5)
계	37(100)	9(100)	264(100)	310(100)

$$\chi^2(2)=11.91, p < .01$$

마지막으로 <표 4-30>에서는 경영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담당부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교육제도 보유율(72.3%)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육제도 도입 시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0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보유 여부와 경영형태

(단위: 개, %)

교육제도 보유여부	경영형태					
	완전한 오너경영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약간 개입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상당히 개입	완전한 전문경영인 경영	기타	계
보유함	58(35.6)	22(53.7)	4(25.0)	34(72.3)	33(66.0)	151(47.6)
보유하지 않음	105(64.4)	19(46.3)	12(75.0)	13(27.7)	17(34.0)	166(52.4)
계	163(100)	41(100)	16(100)	47(100)	50(100)	317(100)

$$\chi^2(4)=31.64, p < .001$$

〈표 4-31〉에서는 ‘법령위반방지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예를 들어, 익명의 신고/상담 창구설치 및 처리절차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여기서도 앞서 윤리 및 준법경영 관련 부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쪽이 많았다(61.2%).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시기를 물었는데 이것 역시도 2000년 이전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응답이 많아서(48%) 마찬가지로 교육시스템이나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해 왔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표 4-31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여부 및 도입시기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	있다	123	38.8
	없다	194	61.2
계		317	100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도입 시기	2000년 이전	59	48.0
	2001년 ~ 2003년	15	12.2
	2004년 ~ 2006년	22	17.9
	2007년 이후	24	19.5
	모름 / 무응답	3	2.4
계		123	100

한편 교차분석 결과,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의 보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업종, 종업원 수, 외국인 지분 보유 여부, 경영형태 등의 변수였다. 〈표 4-32〉에서는 업종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높은 비율(78.6%)로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32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업종 구분

(단위: 개, %)

시스템 보유여부		보유함	보유하지 않음	계
업종 구분	제조업	30 (31.9)	64 (68.1)	94 (100)
	건설업	5 (27.8)	13 (72.2)	18 (100)
	운수업	8 (25.8)	23 (74.2)	31 (1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9 (34.6)	17 (65.4)	26 (100)
	사업서비스	9 (42.9)	12 (57.1)	21 (100)
	도매 및 소매업	23 (41.8)	32 (58.2)	55 (100)
	숙박 및 음식점업	2 (33.3)	4 (66.7)	6 (100)
	금융 및 보험업	22 (78.6)	6 (21.4)	28 (100)
	통신업	5 (38.5)	8 (61.5)	13 (10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0 (0)	3 (100)	3 (10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4 (44.4)	5 (55.6)	9 (100)
	부동산 임대업	5 (41.7)	7 (58.3)	12 (1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 (100)	0 (0)	194 (61.2)
계		123 (38.8)	1 (100)	317 (100)

 $\chi^2(12)=27.92, p < .01$

〈표 4-33〉에서는 종업원 규모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의 전담부서, 교육제도 문항에서와 유사하게 종업원 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 보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4〉에서는 외국인 지분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59.5%, 77.8%). 〈표

4-35)에서는 경영형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의 경우 시스템 보유비율이 높았다(63.8%). 한편 시스템 도입시기와 관련한 교차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33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종업원 규모

(단위: 개, %)

시스템 보유여부	종업원 규모				
	50명 미만	50명~100명	100명~300명	300명 이상	계
보유함	8(14.3)	18(26.1)	41(37.3)	56(68.3)	123(38.8)
보유하지 않음	48(85.7)	51(73.9)	69(62.7)	26(31.7)	194(61.2)
계	56(100)	69(100)	110(100)	82(100)	317(100)

$$\chi^2(3)=49.01, p < .001$$

표 4-34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외국인 지분

(단위: 개, %)

시스템 보유여부	외국인 지분			
	50%미만	50%이상	외국인 지분 없음	계
보유함	22(59.5)	7(77.8)	89(33.7)	118(38.1)
보유하지 않음	15(40.5)	2(22.2)	175(66.3)	192(61.9)
계	37(100)	9(100)	264(100)	310(100)

$$\chi^2(2)=15.33, p < .001$$

표 4-35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보유 여부와 경영형태

(단위: 개, %)

시스템 보유여부	경영형태					
	완전한 오너경영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약간 개입	전문경영인 있으나 오너 상당히 개입	완전한 전문경영인 경영	기타	계
보유함	39(23.9)	20(48.8)	5(31.3)	30(63.8)	29(58.0)	123(38.8)
보유하지 않음	124(76.1)	21(51.2)	11(68.8)	17(36.2)	21(42.0)	194(61.2)
계	163(100)	41(100)	16(100)	47(100)	50(100)	317(100)

$$\chi^2(4)=37.45, p < .001$$

〈표 4-36〉에서는 계속해서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방법 및 홍보 대상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먼저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내연수 및 세미나(39.0%)’와 ‘인트라넷 및 이메일 공지(26.8%)’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이러한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의 보유 사실을 홍보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쪽 모두 거의 절반씩 ‘그렇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는 쪽으로 나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4-36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홍보방법 및 홍보대상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홍보 방법	인사 연수, 사내 세미나	48	39.0
	사내 트레이너 제도	11	8.9
	사보, 팜플렛	6	4.9
	인트라넷 게재, 메일	33	26.8
	특별히 공시하지 않음	16	13.0
	기타	9	7.2
계		123	100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에 대해 투자자에게 홍보 여부	그렇다	58	47.2
	아니다	63	51.2
	모름 / 무응답	2	1.6
계		123	100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에 대해 소비자에게 홍보 여부	그렇다	61	49.6
	아니다	61	49.6
	모름 / 무응답	1	0.8
계		123	100

〈표 4-37〉은 이러한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이 적절하며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사외의 제 3자가 포함된 평가제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 다소 많았다(55.3%). 이러한 결과는 법령위반과 관련된 사실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하는 기업의 태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입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합한다면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43.9%) 상당히 높다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표 4-37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평가제도 보유여부

구 분	업체(개)	백분율(%)
그렇다	43	35.0
도입예정	11	8.9
없다	68	55.3
모름 / 무응답	1	0.8
계	123	100

〈표 4-38〉에서는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법령위반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형화된 신고 및 처리절차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선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69.1%).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이 단순히 추상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처리절차들이 명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직위에 따라 다른 처리절차가 시스템 안에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다(79.7%). 이러한 결과는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이 보다 더 정밀하게 직위에 따른 법령위반 가능성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38 법령위반방지 시스템 처리절차

문 항 내 용	구 분	업체(개)	백분율(%)
정형화된 신고/ 처리절차 보유여부	그렇다	85	69.1
	아니다	37	30.1
	모름 / 무응답	1	0.8
계		123	100
직위에 따라 차별화된 처리절차 보유여부	그렇다	23	18.7
	아니다	98	79.7
	모름 / 무응답	2	1.6
계		123	100

6.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 평가

한편 <표 4-39>는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이 적절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며, 이것이 인사상의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대다수였다(71.6%). 그러나 반면에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이 인사사고과에 포함된다는 기업은 오히려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53.6%). 이러한 결과는 매우 역설적으로 보인다.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을 인사상 인센티브에 반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시각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는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기업 차원에서의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이러한 부분들을 고위직급의 평가자에게 일임하게 된다면 공적인 윤리성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재단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 및 준법경영을 위해 이러한 기준에 대해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표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4-39 사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 평가지표 보유여부	그렇다	89	28.1
	아니다	227	71.6
	모름 / 무응답	1	0.3
계		317	100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 인사사고과 반영여부	그렇다	170	53.6
	아니다	145	45.7
	모름 / 무응답	2	0.6
계		317	100

한편 이 밖에 위의 두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두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Ⅲ.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1. 법령위반으로 인한 피해

이 부분에서는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먼저 <표 4-40>에서는 ‘타사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의 약 9.1%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시기를 살펴보면 주로 2004년 이후에 타기업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75.8%). 한편 본 문항들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40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시기

문 항 내 용	구 분	업체(개)	백분율(%)
타사의 법령위반에 의한 피해여부	있다	29	9.1
	없다	286	90.2
	모름 / 무응답	2	0.6
계		317	100
피해경험 있는 경우, 피해 입은 시기	2000년 이전	3	10.3
	2001년 ~ 2003년	4	13.8
	2004년 ~ 2006년	11	37.9
	2007년 이후	11	37.9
계		29	100

<표 4-41>에서는 국내기업에 의한 피해였는지, 해외기업에 의한 피해였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국내기업에 의한 피해였다(89.7%). 해외기업에 의한 사례는 ‘양쪽 모두’라는 응답을 포함해서 단 3건에 불과해 법령위반에 의한 피해가 주로 국내 기업 간의 거래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1 가해기업의 국적

구 분	업체(개)	백분율(%)
국내 기업	26	89.7
해외 기업	1	3.4
양쪽 모두	2	6.9
계	29	100

〈표 4-42〉에서는 ‘타사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가능한 모든 방식을 모두 동원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7.9%), ‘형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을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행정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서술형 문항에서는 국내기업에 의한 경우, 유사상표 및 특허침해 등의 사례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고, 그 밖에 부당염가판매,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기업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도 비록 사례수는 적지만 특허침해와 유사상표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로 조사되었다.

표 4-42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구 분	업체(개)	백분율(%)
행정관청에 진정 접수(행정제재조치 청원)	4	13.8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	7	24.1
민사소송 제기	5	17.2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시에 동원	11	37.9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1	3.4
모름/무응답	1	3.4
계	29	100

2. 피해에 대한 대응수단과 만족도

한편 피해사실에 대한 각종 대응수단(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대한 만족도 결과와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 4-43〉에서는 ‘민사적 대응제도(피해배상제도)의 수준이 만족스러운가’라는 질문과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통’ 응답을 제외하고 민사상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라는 응답은 약 10%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민사적 피해보상제도에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민사적 피해보상제도에 대해 매우 불만족 한다는 기업과 불만족한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문항에서는 주로 피해배상의 복잡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뽑혔다(59.4%). 법적 처리절차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팀과 같은 전담부서가 없는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판결에 의한 피해배상액이 적다는 응답도 약 18.8%에 달하였다.

표 4-43 민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민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0	0
	만족	70	22.1
	보통	197	62.1
	불만족	29	9.1
	매우 불만족	3	0.9
	모름 / 무응답	18	5.7
계		317	100
민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피해배상 제도 미비	3	9.4
	판결에 의한 피해배상액 약소	6	18.8
	피해배상 절차의 복잡성	19	59.4
	기타	3	9.4
	모름/무응답	1	3.1
계		32	100

한편 형사적 제재(형사처벌)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 (23.6%) 부정적인 의견(8.2%)에 비해 많았다(〈표 4-44〉 참조).

마찬가지로 불만족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혀서(50%) 형사적 제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의 이유가 민사적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형사처벌제도의 미흡(23.1%)과 경미한 형사처벌(19.2) 순으로 형사제재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꼽혔다.

표 4-44 형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형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2	0.6
	만족	73	23.0
	보통	200	63.1
	불만족	23	7.3
	매우 불만족	3	0.9
	모름 / 무응답	16	5.0
계		317	100
형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형사처벌 제도의 미흡	6	23.1
	경미한 형사처벌	5	19.2
	형사절차의 번잡성(피해자 진술, 증언 등)	13	50.0
	양형 기준의 자의적 적용	1	3.8
	모름/무응답	1	3.8
계		26	100

이와 같은 결과는 행정적 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행정적 제재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의견(24.6%)이 부정적인 의견(9.2%)보다 우세했으며, 행정제재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미흡한 행정제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51.7%로 다수를 차지했다(〈표 4-45〉 참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에는 중립적 시각을 가진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기업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기업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5 행정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행정적(행정제재) 대응제도 만족도	매우 만족	0	0
	만족	78	24.6
	보통	197	62.1
	불만족	24	7.6
	매우 불만족	5	1.6
	모름 / 무응답	13	4.1
계		317	100
(행정적 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행정제재 제도의 미흡	15	51.7
	경미한 행정제재	11	37.9
	기타	2	6.8
	모름 / 무응답	1	3.4
계		29	100

Ⅳ.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 및 제재 경험

앞서 밝혔듯이 이 부분에서는 기업이 저지른 법령위반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동기에서 그러한 법령위반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제도상의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것이다.

〈표 4-46〉에서는 조사대상 기업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 형사제재, 민사소송과 관련된 경험여부와 시기,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재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특징으로 행정제재와 민사소송의 경우 전체의 약 10%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형사제재의 경우 나머지 두 제재에 비해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5.7%). 이것은 기업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주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다른 제재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재의 경험 시기는 샘플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큰 특징을 찾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제재와 민사소송의 경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형사제재의 경우는 2009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이러한 각종 제재를 경험한 이유로는 ‘주로 착오 혹은 실수’나 ‘규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세 가지 제재 수단 항목에 대해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법령을 위반했으며 어떤 제재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세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 및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사제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노동조합법 등의 위반과 관련되어 있으며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주로 민법 관련 위반에 따른 손해액 배상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⁴⁾.

64) 보다 자세한 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위반된 내용은 세법, 식품위생법, 위생법, 경비업법, 공정거래법, 교통법위반, 공천거래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노동조합법, 무정차통과, 운수교통사업법위반, 물품표시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약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환관리법, 운수사업법, 원산지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특별자연공원법, 폐기물 관리법, 표시, 광고 공정화에 따른 법률, 환경배출오염, 환경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있었다. 처분내용은 과태료, 벌금, 경고, 근로자복지, 가동중지명령, 고용명령, 과세, 과징금, 시정조치, 정정보도, 주의 및 감시인 지정 등이 있었다. 한편 형사처분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노동조합법, 도로법위반, 부가세(횡령), 산업안전보건법, 상표법, 소음진동규제법, 약사법위반,

표 4-46 법령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경험 여부

문항내용	구분	행정제재	형사제재	민사소송
제재경험여부	있다	40 (12.6%)	18 (5.7%)	39 (12.3%)
	없다	269 (84.9%)	292 (92.1%)	270 (85.2%)
	모름 / 무응답	8 (2.5%)	7 (2.2%)	8 (2.5%)
계		317(100%)	317(100%)	317(100%)
제재경험시기	2000년 ~ 2002년	6 (15.0%)	1 (5.6%)	6 (15.4%)
	2003년 ~ 2005년	9 (22.5%)	2 (11.1%)	7 (17.9%)
	2006년 ~ 2008년	15 (37.5%)	4 (22.2%)	15 (38.5%)
	2009년 이후	7 (17.5%)	10 (55.6%)	9 (23.1%)
	모름 / 무응답	3 (7.5%)	1 (5.6%)	2 (5.1%)
계		40(100%)	18(100%)	39(100%)
제재경험이유	규정(법)을 잘 몰라서	11 (27.5%)	7 (38.9%)	3 (7.7%)
	착오 또는 실수로	16 (40.0%)	6 (33.3%)	15 (38.5%)
	알면서 일부러	3 (7.5%)	1 (5.6%)	1 (2.6%)
	기타	9 (22.5%)	4 (22.2%)	18 (46.2%)
	모름 / 무응답	1 (2.5%)	0 (0%)	2 (5.2%)
계		40(100%)	18(100%)	39(100%)

V.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1. 각종 제재수단의 문제점

이 부분에서는 기업이 느끼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재수단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의 의견 등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행정제재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결과에서 ‘과도한 행정조사권(40.7%)’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시스템의 의무구축(34.4%)’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법위반 등의 법률위반행위가 있었으며 처벌결과로는 벌금, 과징금, 과태료, 무혐의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한 경우에서 적용된 법률로는 민법, 손해배상, 고속도로교통사고구상금청구소송, 건설환경피해소송, 근로기준법, 급여계산오류(사회보험 등 관련), 당해사 재산가압류에 의한(영업) 물품 계약 해제, 보험금 청구의 소, 상거래상기업간의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유사상품, 인감도용, 임금 관련건, 정보통신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계약에 관한 법률, 토지분쟁소송(소유권문제), 특허개 발위반 등이 있었으며, 처분내용으로는 승소, 손해액배상, 계약대금지급, 과태료, 급여추가지급, 무혐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합의조정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제재 관련 현행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43.2%)’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금지규정(27.8%)’을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꼽았으며, 행정제재 관련처벌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영업정지(30.3%)’와 ‘영업취소(22.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행정 제재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제재 처벌내용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 기준의 불명확성(52.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25.2%)’가 다수를 차지했다(이상 <표 4-47> 참조).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행정제제조치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더욱이 그것이 기업의 이윤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때 가장 큰 불만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표 4-47 행정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행정제재 관련제도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부고발자보호/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	109	34.4
	지나친 신고포상금제도	37	11.7
	과도한 행정조사권	129	40.7
	준법감시인제도	19	6.0
	기타	3	0.9
	없다	12	3.8
	모름/무응답	8	2.5
계		317	100
행정제재 관련 현행법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	137	43.2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불가능한 규정	88	27.8
	과도한 금지규정	19	6.0
	과도한 행정규제단속	28	8.8
	소명기회 부족	12	3.8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영업정지 등)	8	2.5
	과도한 금전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등)	9	2.8
	행정제재와 형벌의 이중처벌	3	0.9
	없다	7	2.2
	모름/무응답	6	1.9
계		317	100
행정제재 관련처벌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영업정지	96	30.3
	영업취소	72	22.7
	과태료	33	10.4
	과징금	23	7.3
	법위반 사실 공표	17	5.4
	행정상의 공표	12	3.8
	인허가 불허	45	14.2
	없다	14	4.4
	모름 / 무응답	5	1.6
계		317	100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행정제재 처벌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기준의 불명확성	165	52.1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	80	25.2
	지나친 액수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51	16.1
	기타	4	1.2
	없다	12	3.8
	모름/무응답	5	1.6
계		317	100

이러한 문제는 형사제재에 대한 불만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8>에서는 형사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형사제재와 관련된 현행법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의 약 40.1%가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을 꼽았다. 그에 이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형벌규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39.4%).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역시 형사제재에 있어서도 기준의 불명확성과 비현실성에 기업들이 큰 불만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사제재의 내용에서의 불만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수사의 복잡성, 번잡성(36.6%)’, ‘벌금액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17.7%)’, ‘양벌규정(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8 형사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형사제재 관련 현행법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	127	40.1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	125	39.4
	과도한 금지규정(형벌규정)	48	15.1
	기타	2	0.6
	없다	8	2.5
	모름/무응답	7	2.2
계		317	100
형사제재 처벌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수사의 복잡성, 번잡성	116	36.6
	벌금액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	56	17.7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또는 사업주)의 연대책임: 양벌규정	54	17.0
	형사제재 종류의 단순성(벌금형)	7	2.2
	기업에 대한 형벌 감경(면제) 규정의 부재	18	5.7
	과도한 벌금형 부과	13	4.1
	행정제재와 형벌의 이중처벌	20	6.3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의 부재	15	4.7
	기타	2	0.6
	없다	10	3.2
	모름/무응답	6	1.9
계		317	100

한편 민사소송에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형사제재와 마찬가지로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52.4%)’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31.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실제 민사소송제도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항에서는 ‘소송제도 전반’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집단소송제도’ 20.8% ‘소비자단체소송제도’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상 <표 4-49> 참조).

표 4-49 민사제재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민사소송 관련 현행법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	166	52.4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금지규정	99	31.2
	과도한 금지규정	27	8.5
	기타	7	2.2
	없다	11	3.5
	모름/무응답	7	2.2
계		317	100
민사소송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56	17.4
	선정당사자제도	26	8.2
	집단소송제도	66	20.8
	손해배상제도 전반	118	37.2
	기타	4	1.2
	없다	20	6.3
	모름/무응답	28	8.8
계		317	100

2. 법준수프로그램 관련

한편 향후 기업제재에 관한 법과 제도 수립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업의 생각을 설문하였다. 먼저 <표 4-50>에서처럼 ‘기업차원에서 자체 법준수를 위한 사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형사제재 그리고 행정제재 상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었다.

먼저 형사제재의 경우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53.6%). 이러한 응답은 형사적 제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업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

벌규정에 의한 처벌면제(17.4%)나 형의 완화(18.6%) 같은 형사적 제재의 경감을 인센티브로 원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었다.

반면에 행정제재 상의 인센티브에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혜택에 대한 필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44.5%), 그 밖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감경(24.6%), 직권조사 면제(8.2%)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제재의 감경보다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이윤과 직결되는 행정적 제재의 완화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50 법준수프로그램의 운영시 인센티브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기업자체의 법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상 인센티브	형사소추 면제	19	6.0
	처벌면제(양벌규정에 의한 면책)	55	17.4
	완화된 양형(형의 선고)	59	18.6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	170	53.6
	모름 / 무응답	14	4.4
계		317	100
기업자체의 법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상 인센티브	과태료 또는 과징금 감경	78	24.6
	직권조사 면제	26	8.2
	법위반사상 공표 유예	14	4.4
	인증업체 광고허용	4	1.3
	정부(군납 포함) 입찰시 우대	18	5.7
	기술지원	17	5.4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	141	44.5
	기타	4	1.2
	모름 / 무응답	15	4.5
계		317	100

또한 <표 4-51>에서처럼 법준수를 위한 사규 및 프로그램에서 회사의 자체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정부주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47.6%). 이러한 결과는 제재에 대한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것이 법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어느 쪽도 낫다고 할 수 없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39.1%나 되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 제시가 기업의 이윤과 상충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1 법준수프로그램 운영시 정부의 기준 제시 여부

구 분	업체(개)	백분율(%)
독자적인 구축으로 충분하다	34	10.7
정부 주도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51	47.6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다	124	39.1
모름 / 무응답	8	2.5
계	317	100

3. 다른 처벌수단의 필요성

한편 제재에 있어서 기존의 제재가 거의 벌금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만으로 좋은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제재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벌금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28.4%로 19.6%를 차지한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비해 소폭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과반 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표 4-52〉 참고).

표 4-52 다른 형벌 수단의 필요성 여부

문 항 내 용	구 분	업체(개)	백분율(%)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벌제도의 필요성	벌금형만으로 충분하다	90	28.4
	그 밖의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봄	62	19.6
	어느 쪽이 낫다고 볼 수 없다	163	51.4
	모름 / 무응답	2	0.6

마지막으로 앞선 문항에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몇 가지 대체 제재수단을 제시하며 도입 필요성을 물었다.

주로 기업의 보호관찰, 기업의 사회봉사, 원상회복, 개선명령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긍정하는 모습이었으나 주식벌금제, 기업의 해산 및 영업정지, 유죄 판결의 공표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모습 역시도 앞에서 언급했던 기업이 경제의 이윤에 따라 제재에 대한 선호가 바뀐다는 경향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표 4-53〉 참고).

표 4-53 다른 처벌수단에 대한 의견

문항내용	구분	업체(개)	백분율(%)
기업의 보호관찰	매우 필요	14	22.6
	필요	34	54.8
	불필요	10	16.1
	매우 불필요	3	4.8
	모름 / 무응답	1	1.6
계		62	100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매우 필요	17	27.4
	필요	32	51.6
	불필요	9	14.5
	매우 불필요	3	4.8
	모름 / 무응답	1	1.6
계		62	100
유죄판결 공표	매우 필요	6	9.7
	필요	30	48.4
	불필요	19	30.6
	매우 불필요	6	9.7
	모름 / 무응답	1	1.6
계		62	100
주식 벌금제	매우 필요	6	9.7
	필요	16	25.8
	불필요	29	46.8
	매우 불필요	9	14.5
	모름 / 무응답	2	3.2
계		62	100
원상회복	매우 필요	16	25.8
	필요	33	53.2
	불필요	9	14.5
	매우 불필요	3	4.8
	모름 / 무응답	1	1.6
계		62	100
개선명령	매우 필요	23	37.1
	필요	34	54.8
	불필요	2	3.2
	매우 불필요	1	1.6
	모름 / 무응답	2	3.2
계		62	100
기업해산 및 영업정지	매우 필요	4	6.5
	필요	24	38.7
	불필요	27	43.5
	매우 불필요	6	9.7
	모름 / 무응답	1	1.6
계		62	100

제3절 요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및 법령준수의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한 영역에서는 먼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규정의 보유여부, 내용, 운영시기, 활용하는 이유, 관련규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이유는 무엇인지,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의 보유여부를 조회하는지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과반수 이상의 기업(52.4%)에서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로 회사의 규모(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가 클수록 또 전문경영인에 의해 경영될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로 ‘기업윤리 및 법령준수’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밖에 ‘건강 및 안전’, ‘공정거래 및 경쟁’ 등의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규정의 활용 이유로는 ‘고객 만족도 개선(48.2%)’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20.5%)’이라는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은 문항에서는 ‘시간 및 금전적 자원의 부재(46.4%)’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적 지원의 부재(11.3%)’라고 응답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응답(67.5%)이 ‘있다’라는 응답(32.5%)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사회적 책임 규정 보유 여부를 거래에 있어서 활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내거래처 및 해외거래처 모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국내 87.1%, 해외 91.5%). 거래처에 규정 보유여부를 확인한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업윤리 및 법령준수’, ‘자유 및 공정거래’ 등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과 관련한 문항에 있어서는 그것의 필요성, 필요이유, 필요요소 등을 확인했으며 관련 세부내용과 제도 및 시스템 보유여부,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2%를 보임으로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란 응답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수익과 전략 차원’이라는 응답도 22%로 높게 나타났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대다수의 기업이

‘CEO의 의지’를 선택했다(60.9%). 그 밖에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인프라’라고 응답한 기업도 24.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항목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뇌물 수수’와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기업신용훼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의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65.3%로 있다고 응답한 34.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 외국인의 지분비율, 증권시장의 상장여부, 기업경영형태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법령위반 방지 교육제도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52.4%의 기업이 이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47.6%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유시기는 ‘2000년 이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는 기업의 업종별 구분, 기업규모, 경영형태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주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이러한 교육제도의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마찬가지로 클수록 보유 비율이 높았고, 역시 전문경영인이 경영할 경우 보유 비율이 높았다. 법령위반방지시스템의 경우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1.2%로 나타났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8.8%’로 나타났다. 도입시기는 ‘2000년 이전’이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경영형태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국인 지분 보유여부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업종에서는 교육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조업 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일수록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스템의 홍보와 관련하여 주 홍보방법으로 ‘인사 연수 및 사내 세미나’라고 응답한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인트라넷 게재, 메일’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뒤를 이었다. 또 이러한 시스템을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홍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의 절반씩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응답을 보였다. 한편 시스템에 대한 평가제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니다’란 응답이

55.3%를 보임으로써 다수를 차지했으며, 정형화된 신고처리 절차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유하고 있다’의 비중이 높았고(69.1%), 지위에 따른 차별화된 처리절차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79.7%)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원의 윤리성 및 준법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란 응답이 71.6%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것이 인사고가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3.6%로 더 높게 나타났다.

타사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사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한 영역에서는 피해사실여부 시기, 대응방식,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피해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기업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90.2%). 피해시기로는 주로 2004년 이후에 집중되었으며(75.8%), 가해기업은 주로 국내 기업이 많았다(89.7%).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37.9%). 한편 피해사실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민사적 대응제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한 ‘보통’을 제외하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한 경우의 이유로는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다. 형사적 대응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의 응답이 높았으며, 역시 ‘절차의 번잡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 행정적 대응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제도의 미흡’을 꼽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기업의 법령위반 실태 및 제재 경험을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한 영역에서는 기업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제재경험여부와 제재경험시기,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모든 제재에서 제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행정제재 경험이 있는 기업은 40개 기업(12.6%), 형사제재의 경우 18개 기업(5.7%), 민사소송의 경우 39개 기업(12.3%)로 나타났다. 제재경험 시기는 행정제재의 경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가 15개 기업으로 가장 높았고, 형사제재의 경우 2009년 이후가 10개 기업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가

15개 기업으로 가장 높았다. 제재경험이유로는 행정제재와 민사소송의 경우 ‘착오 또는 실수’가 각각 16개 기업과 15개 기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형사제재의 경우 ‘규정을 잘 몰라서’란 응답이 7개 기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대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영역에서는 각종 제재의 문제점과 내부규정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다른 처벌 수단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행정제재 관련제도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과도한 행정조사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 ‘내부고발자보호/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이라는 응답도 34.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정제재 관련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정제재 관련 처벌 중 가장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영업정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처벌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영업정지 및 취소 기준의 불명확성’을 꼽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았다. 한편 형사제재에 있어서 관련 현행법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이 40.1%,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이라는 응답이 39.4%를 차지했다. 형사제재 처벌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수사의 복잡성과 번잡성’을 지적한 응답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관련 현행법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역시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2.4%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는 ‘손해배상제도 전반’이라는 응답이 37.2%, ‘집단소송제도’라는 응답이 20.8%를 차지했다.

한편 법준수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시 기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먼저 형사제재의 경우,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53.6%로 다수를 차지했다. 행정제재에 대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4.5%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법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의 기준 제시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47.6%의 기업이 ‘정부 주

도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처벌 수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벌금형 이외의 다른 형벌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으며, ‘벌금형만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28.4%,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9.6%로 나타났다. 다른 처벌수단에 대한 의견으로 기업의 보호관찰,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원상회복, 개선명령 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긍정하였으며, 주식벌금제, 기업 해산 및 영업정지, 유죄판결의 공포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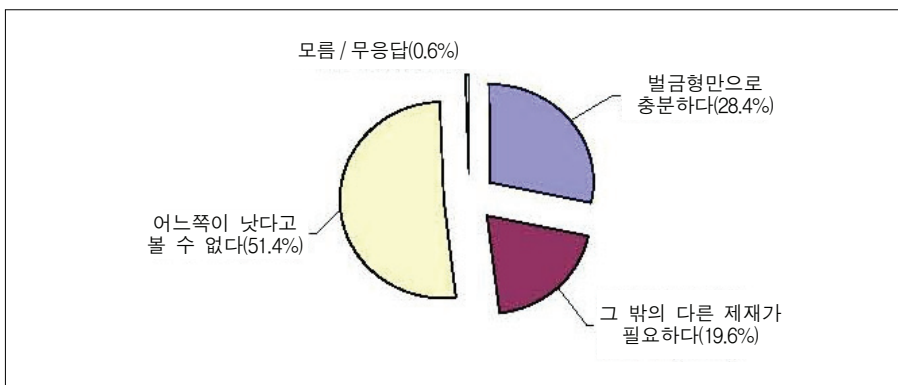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새로운 형사제재 방법의 모색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이 양벌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제재 체계를 고집하면서,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며,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련의 양벌

그림 5-1 새로운 형벌 수단의 필요성 여부



규정 보완대책은 양벌규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⁶⁵⁾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편 제재에 있어서 기존의 제재가 거의 벌금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만으로 좋은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제재수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19.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벌금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28.4%에 불과하다는 점과, ②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재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1.4%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업도 새로운 제재수단의 도입에 상당부분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5-1>).⁶⁶⁾

이에 그 동안 많은 기업범죄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규정 도입, 유죄판결의 공표, 주식벌금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원상회복, 개선명령, 법인해산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 도입방안이 제시되어 왔다.⁶⁷⁾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범죄의 형태는 ‘다양화’되고 있는데 제재체계는 계속 ‘단순화’된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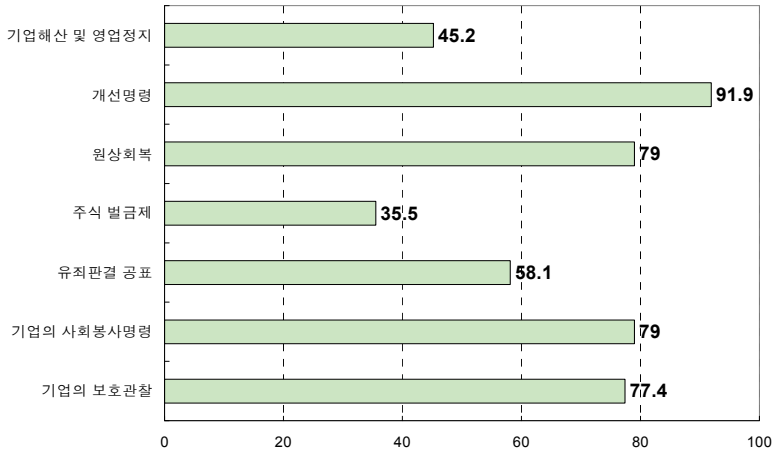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벌금형 이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몇 가지 대체 제재수단을 제시하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5점 척도) - ‘매우필요’와 ‘필요’ 2가지 응답을 합한 수치를 보면,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기업의 사회봉사, 원상회복, 개선명령 등 4가지 제재에 대해 도입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할 주식벌금제, 기업의 해산 및 영업정지 등과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죄판결의 공표 등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65) 이에 관하여는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겨울·특집호, 2004, 63쪽 이하 참조.

66) 이 점은 특히 범죄피해를 경험한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형사처벌)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형사처벌제도의 미흡이 23.1%를 차지하였다.

67) 박기석,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57쪽 이하; 박강우,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2000), 133쪽 이하 등 참조.

그림 5-2 새로운 형벌 수단에 대한 의견



새로운 제재의 도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 별권 - 연구인 ①『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처벌론』 ②『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③『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2절 제재 상호간의 체계화 필요

현행 법률상, 어떤 하나의 위반행위에 발생하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징금(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행정제재), 다양한 형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민사제재), 형벌까지 과할 수 있도록(형사제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형사제재의 위하력 약화(주로 적용이 편리한 행정제재가 선호되기 때문에), 형벌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위반,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형사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제재는 그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즉 모든 문제행위에 대하여 모두 형벌

규정에 의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벌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규정, 즉 행정의무 또는 행정상 협력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행정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상의 제재, 예를 들어 과태료 등과 같은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행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권 발동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노동위원회의 행정명령인 구제명령위반죄(노동조합법 제46조)에 대한 형벌규정의 위헌성 판단에서, “원래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행정명령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라면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⁶⁸⁾

한편, 현행법상 과징금은 형벌(벌금형)과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과징금과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에서 볼 수 있지만,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양자를 병과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⁶⁹⁾ 형사벌과 과징금의 병과가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반자에게 이중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재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징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벌금형으로 일원화하는 방

68)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마 642·2001헌바12(병합) 결정의 반대의견(재판관 윤영철, 김영일, 김경일, 주선희) 참조.

69)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대상자에게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이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중복적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1. 5. 31. 99헌가18 / 99헌바71·111, 2000헌바51·64·85, 2001헌바2(병합)).

안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간명할 뿐만 아니라 형벌의 위하력을 가지고 있어 제재효과도 클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은 과징금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징금 부과대상과 형벌규정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까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화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징금의 벌금형으로의 일원화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일부 형벌규정의 비범죄화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다.⁷¹⁾ 결국, 과징금과 형사벌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제재벌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유형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벌금형(징역형 포함) 부과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그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⁷²⁾ 과징금제도가 사실상 형벌에 의한 고발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형벌을 엄격히 이원화함으로써 형벌규제의 활성화를 다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절 자율규제의 활성화

기업범죄에 대한 공적규제는 강제적인 속성 때문에 대부분 대상 분야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떨어뜨린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규제받게 되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아닌 강제적인 규제 방식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기업범죄처럼 전문적인 범죄의 대처에 한계가 있는

70) 企業犯罪研究會, “企業犯罪研究會報告書 - 獨占禁止法の制裁制度に關する研究”, 法律のひろば, 第54卷 第5号 (2001/5), 56쪽. 다만 이 견해는 그 전제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자유경쟁’ 중심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야 되고, 법인처벌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최정환,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107쪽.

71) 미국에서는 금전적 제재로서 벌금형만이 인정되고,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과 같은 제재는 없으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있음), 독일은 금전적 제재로서 질서위반금(Geldbuße)를 부과하고 있으나 형벌인 벌금형은 없다.

72) 물론,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많은 형벌규정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비범죄화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 역시 형사사법을 집행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책이 자율적인 규제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자율적인 규제체계는 강제력이 적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반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2%로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표 4-14〉 참조), 현실적으로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 참조).⁷³⁾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에서도,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의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65.3%였고(〈표 4-17〉 참조),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52.4%의 기업이 이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표 4-24〉 참조). 한편 법령위반방지 시스템의 존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1.2%로 나타났다(〈표 4-31〉 참조).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규제체계가 미흡한 상태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미흡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기업의 비용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52.4%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보유는 주로 회사의 규모(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가 클수록 강하게 나타났다(〈표 4-4〉~〈표 4-7〉 참조). 그리고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전담부서의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4.7%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 외국인의 지분비율, 증권시장의 상장 여부, 기업경영형태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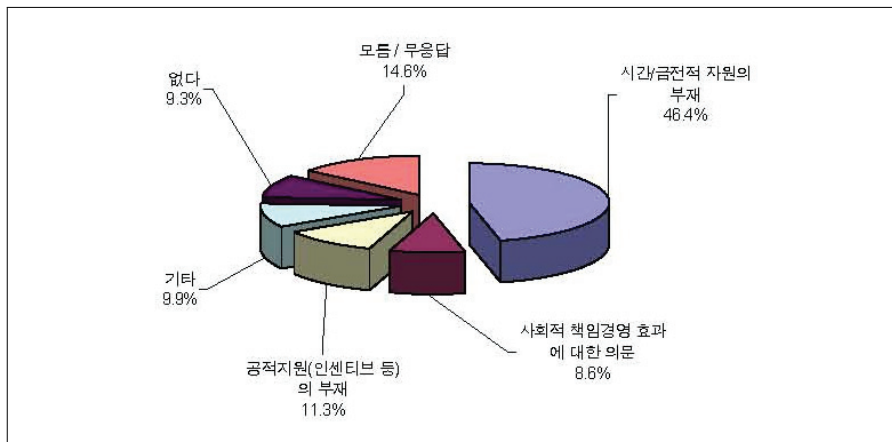
73) 물론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로 ‘기업윤리 및 법령준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84.8%).

많았다(〈표 4-17〉~〈표 4-23〉 참조). 또한 법령위반방지 교육제도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업종별 구분, 기업규모, 경영형태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주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이러한 교육제도의 보유 비율이 높았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마찬가지로 클수록 보유 비율이 높았고, 역시 전문경영인이 경영할 경우 보유 비율이 높았다(〈표 4-25〉~〈표 4-30〉 참조).

한편, CSR과 관련된 독자적인 사내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151개 업체, 47.6%)의 경우, ‘CSR 관련 규정을 활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 ‘시간 및 금전적 자원의 부재’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적 인센티브의 부재’가 11.3%를 차지하였다(그림 5-3). 또한,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행정제재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시스템의 의무구축이’ 34.4%에 달하였다(상술한 〈표 4-47〉 참조).

따라서 이러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⁷⁴⁾

그림 5-3 CSR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74) 그 밖의 논의에 관하여는 이상복,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삼우사, 2005, 286쪽 이하 참조.

최근 준법감시인제도(compliance)가 도입된 후 금융권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기업 및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아직은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매뉴얼, 인력, 재원, 평가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의 미흡, CEO의 인식부재, 교육 및 훈련 부족 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과 관련한 문항에서 시스템의 내용, 운영 및 평가 체계, 교육 등에 대한 각기 상이하고 다양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인 47.6%의 기업이 ‘정부 주도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윤리경영이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활동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제도가 제대로 확립된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나 과징금의 감경과 같은 금전적인 행정적 혜택이나, 형사책임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양형기준(1991년)에서도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연방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벌금이 대폭 감경되며, 임직원은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Federal Sentencing Guideline § 8C2.5(f)(g), § 8C4.10 등 참조).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법준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혜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 과태료 또는 과징금 감경(24.6%), 직권조사 면제(8.2%)가 그 뒤를 이었다. 형사적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기는 하였지만(53.6%) -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면제(17.4%)와 형의 완화(18.6%)의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림 5-4 형사적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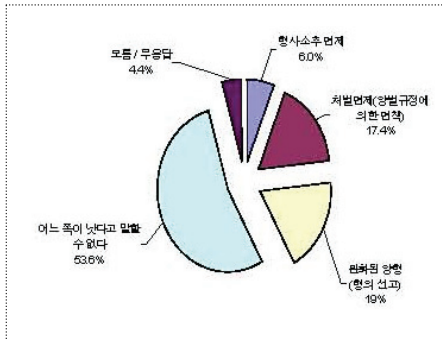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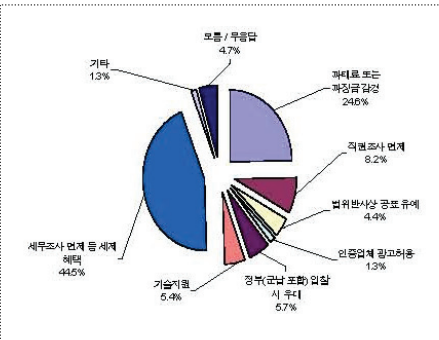


그림 5-5 행정적 인센티브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분야 이외에도 특히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규제가 많은 경제활동영역인 공정거래, 노동, 환경, 보건분야 등에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이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는 - 별권 - 연구인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4절 제재내용의 명확화

조사결과(제4장)에 따르면, 형사제재 경험이유로는 ‘규정을 잘 몰라서’란 응답이 7개 기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46〉). 그리고 행정제재,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서는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행정제재는 43.2%, 형사제재는 40.1%,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52.4%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47〉).

따라서 새로운 제재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에 있어서는 -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업은 실제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에 대한 인식조사는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윤리경영(Corporate Ethics), 법령준수(Compliance) 등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② 타사의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사례, ③ 기업의 위법사례와 이로 인한 처벌 결과, ④ 기업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에 관련된 인식과 향후 대책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제재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유일한 형사제재인 양벌규정에 대한 일련의 보완대책은 양벌규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규정 도입, 유죄판결의 공표, 주식벌금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원상회복, 개선명령, 법인해산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형사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제재는 그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즉 모든 문제행위에 대하여 모두 형벌규정에 의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중복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비범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과 형벌(벌금형)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하여 이원화하여야 한다. 즉,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제재벌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유형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벌금형(징역형 포함) 부과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그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자율규제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공적규제(형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적발의 어려움 등 기업범죄의 특성상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가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자율적인 규제체계는 강제력이 적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발생시키는 기반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율규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활동과 공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제도는 금융분야 이외에도 특히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규제가 많은 경제활동영역인 공정거래, 노동, 환경, 보건분야 등에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의 제재경험이나 제재체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도려해 볼 때, 새로운 제재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에 있어서는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6.
- 국회 법제실, 입안기준에 대한 몇가지 재검토, 법제현안 제2007-16호(2007).
- 국회 법제실,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에 관한 입안기준의 검토, 법제현안, 제2007-17호(2007).
- 국회사무처 법제실, 양벌규정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현안 제2003-10호 (2003).
-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한양대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 제58호 (2004 여름).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관련 법령상의 애로실태 조사, 보도자료(2005-5-9)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도자료(2007-5-9)
- 박강우,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2000).
- 박광섭,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충남대 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1998).
- 박기석,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박기석,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법무부, 보도자료(2008-7-24) “2008. 7.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 법무연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권 행사 방안 연구, 2008.
- 신동운, 형법총론, 2005.
- 윤동호,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과 현실”, 형사정책연구 제65호(2006·봄호).

- 이동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론, 1997.
- 이상돈, 윤리경영과 형법, 2005.
- 이상복,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삼우사, 2005.
- 이정민/신의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8.
-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0권 제4집(2009).
-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의 준법감시제도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 연구 통권 제81호(2010·봄호).
- 이천현, “기업범죄의 억제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과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2호(2004 겨울·특집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동향, CEO REPORT ON CURRENT ISSUE, 2006.
- 조 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2007/9).
- 조병선, “양벌규정의 구조와 행위자의 특징”, 법무부,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 자료집(2008.6.20).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CSR) 조사결과, 2005.
- 최정학,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 今井猛嘉・白石賢・岡田大作, 企業活動とコンプライアンス: アンケート調査を踏まえた 法的責任のあり方について, 内閣府⁷経済社会総合研究所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134, 2005.
- 企業犯罪研究會, “企業犯罪研究會報告書 - 獨占禁止法の制裁制度に關する研究”, 法律のひろば, 第54卷 第5号 (2001/5).
- 那須幸雄, “『企業の社会的責任』の実態調査に基づく分析 (その1)”, 文教大学国際学部 紀要 第17卷 1号(2006).
- 那須幸雄, “『企業の社会的責任』の実態調査に基づく分析 (その2)”, 文教大学国際学部 紀要 第17卷 2号(2007).

山本和昭, “兩罰規定における業務主に對する罰金額と行爲者に對する罰金額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時報, 第1402号(1992/1).

岩橋義明, “兩罰規定における罰金の連動の切離し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第773号(1992/3).

日本經濟団体連合会 業行動委員会/社会貢献推進委員会 社会的責任経営部会, CSR企業の社会的責任) 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 2005.

国家公務員共済組合連合会,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原則, 2005.

郷原信郎, “獨占禁止法違反に對する制裁の現状と課題”, 獨占禁止法のエンフォースメント(日本經濟法學會年報, 第22号), 2001.

Price Waterhouse Coopers, 經濟犯罪意識調査 2007, 2007.

Abstract

Criminal Sanction on Corporate Activity(Ⅱ)

- The Current Practices of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

Lee, Cheon-Hyun

Song, Hyo-Jong

1. Corporate Crimes and Sanction Systems

Various kind of sanctions system that control ever-increasing corporate crimes have developed in Korea: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sanction and civil sanction. And, corporations' self regulation such as compliance program has been also noted as one of major sanction system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criminal sanction, as the necessity of criminal sanction against corporate crime has been emphasized, the perception that fine centered criminal sanction based on bilateral regulation is not quite sufficient has been expanded, which has continuously prompted much research on methods of criminal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since 1990. Also,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sanction, due to its close proximity of effectiveness with criminal sanction,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either criminal sanction into administrative one or administrative one into criminal one has been widely discussed. When it comes to civil sanction, a variety of special procedures for

efficient reparation has been debated and partially introduced. On the other hand, as far as self regulation is concerned, self regulation program such as compliance one has been formally introduced and expanded in recent years.

2. Outlines and Directions

In this study, the current practices of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sanction, civil sanction, and self regulation program have been thoroughly examined for exploring ways of improving a whole array of sanction system.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alternatives,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out corporation's perception about current sanction system and newly suggested sanction programs. In this survey, questionnaires were made on 1) actual conditions and stat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Ethics, and Compliance, 2) corporations' victimization cases due to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y other corporations, 3) cases of corporations' violation of law and the outcomes of the punishment, and 4) perception of the corporations about punishment due to their violations of law.

3. Suggestions

A) New Criminal Sanctions

The bilateral punishment regulations on corporation were supplemented and they were less effective because of limitation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The new criminal sanctions need to be actively introduced: for instance, criminal confiscation and supplementary charge on corporation, publicizing convicted sentencing outcomes, payment of fine by stocks, imposit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 and restoration order,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and etc.

B) Build up of System between Sanctions

Duplicated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 on the same violation of the corporat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single imposition, especially administrative sanction.

This is because problems may be produced, for instance, weak effect of criminal sanction (because of preference of administration sanction to apply it easily and conveniently), violation of ultima ratio of the criminal punishment, and Duplicated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

C) Promotion of Self-regulations

Many types of incentives given by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d and strengthened to activate self regulation systems of corporations.

The official regulation of corporate crimes such as criminal sanction and administrative sanction has difficulties at detection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So, self-regulation can prevent corporate crimes effectively. This is because self-regulation with less compulsory force does not weaken corporate activity and instead helps solve problems of the bases that may commit crimes.

To promote self-regulations, the government shall give corporation kinds of support and official incentives by supplementing system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may give enterprises having monitoring system of observance of laws administrative benefits such as less penalty and money penalty, and paying of incentives that reduces criminal responsibility. The interviewees preferred 'exemption from tax investigation and other tax benefits' of the administrative incentive the most (44.5%), followed by less fine and money penalty (24.6%), and exemption from initiated investigations. More than half of the interviewees skeptically thought that criminal incentive could not be better than others (53.6%), and they thought that preference of bilateral punishment (17.4%)

would be almost same as that of alleviation of the punishment (18.6%).

And, the monitoring system of observance of law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up to not only finance areas but also fair trade, labor, environment and health and medicines and other economic activity areas that have not only plenty of regulations but also complicated trade relations.

D) Clarification of the Sanction

Detailed contents of many regulations should be further clarified to have corporations more aware of prohibited behaviors. The interviewees said that they experienced criminal sanction because they did not know regulations exactly. And, the interviewees said that ‘uncertain and complicated regulation’ would be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administrative sanction (43.2%), civil lawsuit (52.4%) and criminal sanction (40.1%)

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 됩니다

ID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형사법제 연구를 위한 기업체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의뢰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형사법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현재 기업의 경제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 수준 등을 확인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규제 및 제재 수준을 고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사의 답변이 기업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과 운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니, 바쁘시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응답은 통계법에 의 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 및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 드립니다.

2010년 10월

(주)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윤영희 · 김덕영

조사 주관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장 이천현 전화 : 02-3460-5125 이메일 : ib2000@kic.re.kr	실사 진행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정재은 과장/**** 전화 : 02-3415-51** fax : 02-2085-0701~3
---------	--	---------	---

○ 업체 기본정보 기록란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SQ1. 회사명		LIST ID					
SQ2. 지역	 시 군(구)	SQ3. 설립년도	 년	월			
SQ4. 규모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150명 미만 ☐ 150-200명 미만 ☐ 200-250명 미만 ☐ 250-300명 미만 ☐ 300-350명 미만 ☐ 350-400명 미만 ☐ 400명-450명 미만 ☐ 450-500명 미만 ☐ 500명 이상						
SQ5. 주력업종		표준산업분류 코드					
SQ8. 매출규모	☐ 50억 미만 ☐ 50-100억 미만 ☐ 100-200억 미만 ☐ 200-300억 미만 ☐ 300억 이상						
SQ8. 자본금	☐ 30억 미만 ☐ 30-50억 미만 ☐ 50-80억 미만 ☐ 80억 이상						
SQ8. 수출비율	☐ 수출없음 ☐ 10% 미만 ☐ 10-30% 미만 ☐ 30-50% 미만 ☐ 50-70% 미만 ☐ 70% 이상						
SQ9. 상장여부	☐ 코스피(KOSPI) 상장기업 ☐ 코스닥(KOSDAQ)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SQ10. 경영형태	☐ 완전한 오너(창업주) 경영 ☐ 전문경영자 있으나 오너의 개입 약간 있음 ☐ 전문경영자 있으나 오너의 개입 상당히 있음 ☐ 완전한 전문경영인 경영 ☐ 기타						
SQ11. 외국인지분	☐ 10% 미만 ☐ 10-30% 미만 ☐ 30-50% 미만 ☐ 50-70% 미만 ☐ 70% 이상 ☐ 외국인 지분없음 SQ11-1. 외국인 지분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기본 참여 ☐ 기술지원 ☐ 경영참여 ☐ 기술지원 및 경영참여 모두						

○ 응답자 정보 기록란 입니다 (면접원이 직접 작성)

소속부서 및 지위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	---------	--

❖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자신의 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러는 책임으로, 기업 경영활동 시 사회적 공공성, 윤리성, 환경에 대한 고려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근로자들과 그 가족, 지역사회 등 이해 관련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동규범을 정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1. 귀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로 약칭): 기업이 주주, 거래처, 종업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노동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사내규정(사규) 또는 행동규범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문1-1로** ② 아니오 **문1-2로**

문1-1. **CSR 관련 시급/규범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 중에서 귀사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 인권의 존중: 아동노동의 배제 · 외국인 노동자 등의 배려 등
② 건강 · 안전
③ 기업윤리 · 법령준수
④ 공정한 증거거래: 내부자 거래의 방지 등
⑤ 자유 · 공정 · 투명한 거래 · 경쟁
⑥ 고용기회 균등
⑦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⑧ 환경 부하 감감 · 에너지 절약
⑨ 고객 · 주주에 대한 가치의 제공
⑩ 자원 재활용
⑪ 고객정보의 관리
⑫ 지적 소유권 보호
⑬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배제
⑭ 사회 공헌: 기부활동 등
⑮ 기 타 ()

문1-1-1. CSR 관련 시규/규범이 있는 경우 그것은 언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까?

- ① 2000년 이전 ② 2001년~2003년
③ 2004년~2006년 ④ 2007년 이후

문1-1-2. CSR 관련 사규/규범이 있는 경우 귀사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활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2로

- ① ~~포괄~~·행정적 압력 ② 윤리·종교적 이유 ③ 고객만족도 개선
④ ~~직접~~·생산성 향상 ⑤ 공적 인센티브 ⑥ 기타 ()

문1-2. **CSR 관련 시규/규범이 없는 경우** 사회적 책임경영을 활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금전적 자원의 부재 ② 사회적 책임경영 효과에 대한 의문
③ 공적지원(인센티브 등)의 부재 ④ 기타 ()

문1-2-1. **CSR 관련 사규/규범이 없는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 규정을 향후에 수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있다 문 2로 ② 없다 문 3으로

문2. 현재 사회적 책임경영을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사회적 책임경영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 ① 양질의 상품·서비스 제공 ② 지역사회발전
③ 환경친화경영 ④ 법령준수
⑤ 인권보호 ⑥ 노동윤리준수
⑦ 이윤분배 ⑧ 기타 ()

문3. 귀사에서는 국내의 거래처에 대해서 CSR에 관한 조회(거래처의 협력을 얻어 또는 조사 회사 등에 의뢰하여 거래처의 CSR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등)를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② 하지 않고 있다.

문4. 귀사는 해외의 기업과 거래 등을 할 때에 CSR에 관한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 ① 하고 있다. ② 하지 않고 있다.

문5. **문3 및 문4 둘 중 하나라도 보기 1번 응답 있는 경우** CSR에 관한 조희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인권의 존중: 아동노동의 배제 · 외국인 노동자 등의 배려 등
② 건강 · 안전
③ 기업윤리 · 법령준수
④ 공정한 증거거래: 내부자 거래의 방지 등
⑤ 자유 · 공정 · 투명한 거래 · 경쟁
⑥ 고용기회 균등
⑦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⑧ 환경 부하 감감 · 에너지 절약
⑨ 고객 · 주주에 대한 가치의 제공
⑩ 자원 재활용
⑪ 고객정보의 관리
⑫ 지적 소유권 보호
⑬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배제
⑭ 사회 공헌: 기부활동 등
⑮ 기 타 ()

문6. 귀사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귀사의 CSR에 대하여 조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 6-1도 ② 없다

문6-1. **CSR 조화**를 받는 경험에 있는 기업의 경우 그것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복수 응답가능)

- ① 인권의 존중: 아동노동의 배제 · 외국인 노동자 등의 배려 등
② 건강 · 안전
③ 기업윤리 · 법령준수
④ 공정한 증거거래: 내부자 거래의 방지 등
⑤ 자유 · 공정 · 투명한 거래 · 경쟁
⑥ 고용기회 균등
⑦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⑧ 환경 부하 감감 · 에너지 절약
⑨ 고객 · 주주에 대한 가치의 제공
⑩ 자원 재활용
⑪ 고객정보의 관리
⑫ 지적 소유권 보호
⑬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배제
⑭ 사회 공헌: 기부활동 등
⑮ 기 타 ()

문12. 귀사에는 사원의 행위 내지는 기업체로서의 활동이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예: 익명의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나 그 후의 처리절차 등)이 존재합니까?

① 있다 **문 12-1도**

② 없다 **문 13도**

문12-1. 법령위반 방지시스템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① 2000년 이전

② 2001년~2003년

③ 2004년~2006년

④ 2007년 이후

문12-2.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의 내용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 홍보되고 있습니까?

① 인사 연수, 사내 세미나

② 사내 트레이너(trainer) 제도

③ 사보, 팸플렛

④ 인트라넷에의 게재, 메일

⑤ 특별히 공시되지 않음

⑥ 기 타 ()

문12-3. 귀사는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2-4. 귀사는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2-5.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에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외의 제3자(변호사 등)가 포함된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도입 예정

③ 없다

문12-6. 법령위반 방지시스템 등이 있는 경우, 귀사의 법령위반 방지시스템에는 사원으로부터 법령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처리 절차(예: 내부감사절차 등)가 정형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12-7. 법령위반 방지시스템 등이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지위(일반 사원, 해당 행위와 관련된 결정권자, 임원, 대표이사 등)에 따라 다른 처리 절차(대응부서가 다른 경우 등)가 존재합니까?

① 그렇다 **문 12-7-1도**

② 아니다

문12-7-1. 문 12-7 문항과 관련하여, 그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는 귀사의 법적/행정적 처분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문 19 ~ 22번은 기업의 위법사태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1) 행정처분	2) 형사처벌	3) 민사소송
문19. 2000년 이후에 귀사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받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문20도 ② 없다	① 있다 문20도 ② 없다	① 있다 문20도 ② 없다
문20. 반응(당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2000년~2002년 ② 2003년~2005년 ③ 2006년~2008년 ④ 2009년 이후	① 2000년~2002년 ② 2003년~2005년 ③ 2006년~2008년 ④ 2009년 이후	① 2000년~2002년 ② 2003년~2005년 ③ 2006년~2008년 ④ 2009년 이후
문21.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받게(당하게) 된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규정(법)을 잘 몰라서 ② 착오 또는 실수로 ③ 알면서도 일부러 문21-1도 ④ 기타	① 규정(법)을 잘 몰라서 ② 착오 또는 실수로 ③ 알면서도 일부러 문21-1도 ④ 기타	① 규정(법)을 잘 몰라서 ② 착오 또는 실수로 ③ 알면서도 일부러 문21-1도 ④ 기타
문21-1. 위의 문항에서 ③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실적으로 준수 불가능한 규제라서 ②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지 보다 더 큰 이익이 있어서 ③ 관행적으로 ④ 기타	① 현실적으로 준수 불가능한 규제라서 ②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지 보다 더 큰 이익이 있어서 ③ 관행적으로 ④ 기타	① 현실적으로 준수 불가능한 규제라서 ②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제지 보다 더 큰 이익이 있어서 ③ 관행적으로 ④ 기타

문22.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이 행정처분,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을 받은(당한) 적용된 법률 및 처분 내용을 간단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1) 행정처분	- 적용법률: - 처분:
2) 형사처벌	- 적용법률: - 처벌:
3) 민사소송	- 적용법률: - 처분:

♣ 지금부터는 기업의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제재, 민사소송제도와 관련한 인식을 여쭙겠습니다.

※ 문23 ~ 26번은 행정제재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문23. 행정제재와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내부관리시스템 의무구축
- ② 지나친 신고포상금제도
- ③ 과도한 행정조사권 (계좌추적권, 고액현금거래 의무보고제도)
- ④ 준법감시인제도
- ⑤ 기 타 ()

문24. 행정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
- ②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불가능한/어려운 금지규정
- ③ 과도한 금지규정
- ④ 과도한 행정규제단속
- ⑤ 소명기회 부족
- ⑥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영업정지 등)
- ⑦ 과도한 금전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등)
- ⑧ 행정제재와 형벌의 이중처벌
- ⑨ 기 타 ()

문25. 행정제재의 종류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재는 무엇입니까?

- ① 영업정지
- ② 영업취소
- ③ 과태료
- ④ 과징금
- ⑤ 법위반사실의 공표
- ⑥ 행정상의 공표
- ⑦ 인·허가 불허
- ⑧ 기타 ()

문26. 행정제재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기준의 불명확성
- ②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
- ③ 지나친 액수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 ④ 기타 ()

※ 문27 ~ 28번은 형사제재와 관련한 문항입니다

문27. 형사제재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
- ②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불가능한/어려운 금지규정(형벌규정)
- ③ 과도한 금지규정(형벌규정)
- ④ 기 타 ()

문28. 형사제재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수사의 복잡성, 번잡성
- ② 벌금액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
- ③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또는 사업주)의 연대책임: 양벌규정
- ④ 형사제재 종류의 단순성(벌금형)
- ⑤ 기업에 대한 형벌 감경(또는 면제) 규정의 부재
- ⑥ 과도한 벌금형 부과
- ⑦ 행정제재와 형벌의 이중처벌
- ⑧ 실질적 피해회복 제도의 부재
- ⑨ 기타 ()

※ 문29 ~ 30번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문29. 민사소송 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내용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 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
- ②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불가능한/어려운 금지규정
- ③ 과도한 금지규정
- ④ 기 타 ()

문30. 민사소송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소비자단체 소송제도 ② 선정당사자제도 ③ 집단소송제도
- ④ 손해배상제도 전반 ⑤ 기 타 ()

♣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 및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31. 기업이 법령 준수를 위하여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내제도(준법 경영프로그램 운영 등)를 갖추고 있는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① 형사소추 면제
- ② 처벌면제(양벌규정에 의한 면책)
- ③ 완화된 양형(형의 선고)
- ④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문32. 준법경영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기업 자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 ① 과태료 또는 과징금 감경 ② 직권조사 면제
- ③ 법위반사상 공표 유예 ④ 인증업체 광고허용
- ⑤ 정부(군납 포함) 입찰시 우대 ⑥ 기술지원
- ⑦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 ⑧ 기 타 ()

문33 .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입법 또는 실무상 적용하는 경우,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법령 위반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사내제도는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주도 하에서 일정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독자적인 구축으로 충분하다
- ②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문34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기업 자체에 대한 형벌은 유일하게 벌금형뿐입니다. 기업의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그 밖의 다양한 형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벌금형만으로 충분하다
- ② 그 밖의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봄 **문34-1도**
- ③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

문34-1 **그 밖의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각각의 형벌제도에 대한 필요성의 정도를 V 표시로 기업에 주십시오)

	매우 필요	필요	불필요	매우 불필요
① 기업의 보호관찰*				
②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③ 유죄판결의 공표				
④ 주식벌금제*				
⑤ 원상회복*				
⑥ 개선명령				
⑦ 기업의 해산 또는 영업정지*				

※ ① 기업의 보호관찰: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보호관찰관이 감독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② 기업의 사회봉사명령: 기업이 가지고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④ 주식벌금제: 기업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케 하는 제도.

⑤ 원상회복: 피해자의 피해를 민사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

⑦ 기업의 해산 또는 영업정지: 행정제재가 아닌 형벌로서 부과(요건, 절차,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음)

문34-2 . 위에서 언급된 형벌제도 이외에 다른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유롭게 기업해 주십시오.

◆ 오랜 시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총서 10-17-01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
-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

발 행 / 2010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5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삼일기획

(02)503-4800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865-6 93360